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2000. 12

손원익

서 언

단체의 설립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고 공익증진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이는 비영리분야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수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영리분야의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으로 알 수 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큰 정책방향 하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로 대변되는 비영리분야에서 민간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제지원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일부 비영리법인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제가 강화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부분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방지하면서 비영리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비정상적인 운영의 문제는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 및 공시제도의 강화 등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통하여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및 추가적인 민간지원의 유인도 가능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할 때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도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비영리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원의 손원익 박사가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비영리법인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 관련제도가 한 걸음 선진화되길 기대한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매우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두 분의 평가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연구의 수행에 여러 면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송은주 연구원, 자료정리에 수고한 이은정 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오미순 연구조원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一鎬

목 차

| | |
|----------------------------|-----|
| I. 서론 | 11 |
| II.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 13 |
|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13 |
| 2. 비영리법인 현황 | 16 |
| 3. 비영리법인 관련세제 | 26 |
| III. 외국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 41 |
| 1. 미국 | 41 |
| 2. 일본 | 78 |
| 3. 한·미·일 비교 | 95 |
| IV.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02 |
| 1. 기본방향 | 102 |
| 2. 구체적인 개선방안 | 104 |
| 가.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공익성 제고 | 104 |
| 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합리성 제고 | 118 |
| 다.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성 제고 | 122 |
| V. 요약 및 결론 | 128 |
| 참 고 문 헌 | 131 |

| | |
|---|-----|
| <부록 I>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공익법인 | 13 |
| <부록 II>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136 |
| <부록 III>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137 |
| <부록 IV> 지정기부금의 범위 | 19 |
| <부록 V> 재정경제부령에 의해 고시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 145 |
| <부록 VI>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152 |

표 목 차

| | |
|---|----|
| <표 II-1> 연도별 법인 수 현황(1993~1999) | 17 |
| <표 II-2>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1995~1999) | 17 |
| <표 II-3> 공공법인 과세특례 개정내역 | 18 |
| <표 II-4> 주무부처별 비영리법인 현황 | 20 |
| <표 II-5> 주무부처별·비영리법인형태별 현황 | 21 |
| <표 II-6> 고유사업별 공익법인 현황 | 22 |
| <표 II-7>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 23 |
| <표 II-8>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자의 생산 | 24 |
| <표 II-9>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 | 24 |
| <표 II-10>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25 |
| <표 II-11>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 26 |
| <표 II-12>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 27 |
| <표 II-13>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32 |
| <표 II-1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사업 분야 | 38 |
| <표 II-15> 지방세법에 의한 비영리분야 | 39 |
| <표 II-16> 법정기부금의 비영리분야별 분류 | 39 |
| <표 II-17> 지정기부금의 비영리분야별 분류 | 39 |
| <표 III-1> 미국의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 수 | 44 |
| <표 III-2> 연도별·유형별 면세단체 수 | 44 |
| <표 III-3> 비영리자선단체의 규모 및 운영(1996년) | 45 |
| <표 III-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 | 46 |
| <표 III-5> 민간자선기부의 수혜단체 유형별 분류(1996년) | 47 |
| <표 III-6> 민간재단 규모별 재원구성비 | 47 |

| | |
|--|-----|
| <표 III-7> 미국의 면세 비영리법인 수 추이(1989~1996) | 48 |
| <표 III-8> 비영리법인 수의 분야별 증가율(1989~1996) | 49 |
| <표 III-9> 총지출 수준별 재원조달 및 지출 비중 | 50 |
| <표 III-10> 미국경제에서 비영리분야의 비중 | 51 |
| <표 III-11> 재원별 자선 기부금(1996년) | 51 |
| <표 III-12> 민간기부금의 연평균 증가율(1977~1996) | 52 |
| <표 III-13> 비영리 하부조직에 의한 정부지급과 비영리분야 기부금 | 53 |
| <표 III-14> 비영리활동 중 프로그램 부문에 대한 연방지출 (1980~1997) | 54 |
| <표 III-15> 비영리법인의 구분 | 79 |
| <표 III-16> 연도별 공익법인 수의 추이 | 82 |
| <표 III-17> 설립목적별 법인 수(1998년) | 83 |
| <표 III-18> 일본 재단의 자산규모별 분포 | 83 |
| <표 III-19> 유형별 법인 수 | 84 |
| <표 III-20> 유형별 과세 현황 | 85 |
| <표 III-21> 재단법인의 연간수입 구성 | 86 |
| <표 III-22> 재단법인의 연간지출 구성 | 86 |
| <표 III-23> 일본의 공익법인 범위 | 87 |
| <표 III-24> 일본의 수익사업 범위 | 88 |
| <표 III-25> 일본의 법인세율 | 89 |
| <표 III-26> 주요국의 법인 수 비교 | 96 |
| <표 III-27> 주요국의 법인세액 비교(1998년) | 97 |
| <표 III-28>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수 추이 | 97 |
| <표 III-29>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 98 |
| <표 III-30> 주요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 99 |
| <표 III-31>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 101 |

| | | |
|----------|---|-----|
| <표 IV-1> |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부관련 비영리법인 비교 | 105 |
| <표 IV-2> |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대 지방세법상 기부관련 비영리사업자 비교 | 106 |
| <표 IV-3> | 미국의 소득세(Income Tax)법과 증여세(Gift Tax)법상의 공제대상 비교 | 107 |
| <표 IV-4> | 일본의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부관련 공제대상 비교 | 108 |
| <표 IV-5> | 공익성 검토사항 비교(미국·한국) | 116 |

그림목차

| | | |
|------------|--------------------|----|
| [그림 II-1] | 한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 16 |
| [그림 III-1] | 미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 41 |
| [그림 III-2] | 일본의 비영리법인 분류 | 80 |

I. 서론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수는 신고법인 기준으로 1988년에 9,034개로 집계되었으며 1998년에는 12,817개로 10년만에 41.9%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사회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비영리법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커질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고,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크게 고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관련연구가 비영리 각 분야별로 수행되었으며, 외국에서도 이 기간 동안 비영리법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여러 나라의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에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증대 등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립해야 할 세 가지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제지원의 결정과정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합리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관련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기본 정책방향 아래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난 연구 이후의 환경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의 과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관련 현황 및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를 구체적으로 소개·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황은 그 동안 정부조직이 크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개편된 정부조직의 틀에 맞게 자료가 새롭게 구성되어 과거의 연구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주요선진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현황 및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세제가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미국의 관련 세제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세제를 갖고 있는 일본의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를 소개·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비영리법인 관련 조세체계 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합리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II.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과 같은 기타 특별법과 관련이 있다.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세제상의 혜택이 차별화되는 비영리법인의 분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 및 그와 비슷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

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 내지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각 법령에서 그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는 국방, 군사 및 법률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등으로 시설하는 각종의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분야에 따라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취지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종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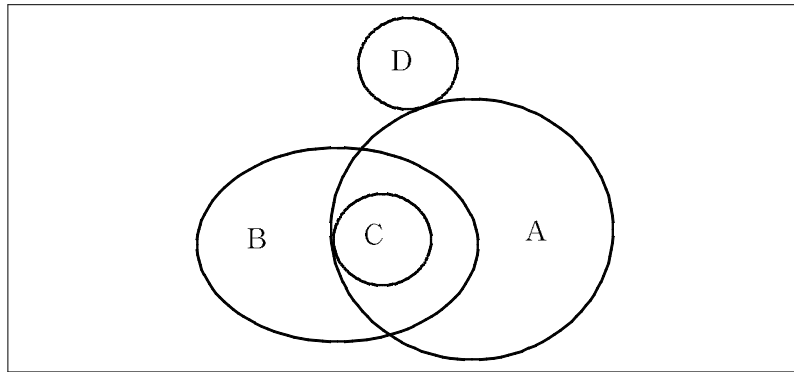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상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¹⁾

이상에서 논의한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제조항을 고려하여 세제상의 혜택이 차별화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분류하면 [그림 II-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일부는 일치하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분야도 존재하고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그림 II-1]에서 A, B, C 외에도 법령에 설치된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허용되는 데 반하여 A, B, C, D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1) 부록 I 참조.

사업준비금을 통한 세제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동창회, 종친회 등이 이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림 II-1] 한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주 : A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
 B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C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D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A, B, C, D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인정되는 법인

2. 비영리법인 현황

<표 II-1>은 1993~1999년 기간중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수의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1999년 말 기준 법인 수 총계는 206,354개이며 이 중 영리법인이 193,059개로 93.6%를, 비영리법인이 13,295개로 6.4%를 구성하고 있다. 1993년과 비교하여 총 법인 중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1993~1999년 기간중 증가율(28.7%)이 영리법인의 증가율(89.4%)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17

비영리법인세수에는 공공법인, 기타공공법인, 일반비영리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표 II-2>에서 공공법인이란 조합법인을

<표 II-1> 연도별 법인 수 현황(1993~1999)

(단위 : 개)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영리법인 | 101,933 | 114,363 | 130,597 | 148,112 | 166,741 | 169,018 | 193,059 |
| 비영리법인 | 10,329 | 11,050 | 11,487 | 11,959 | 12,575 | 12,817 | 13,295 |
| 총계 | 112,136 | 125,413 | 142,084 | 160,071 | 179,316 | 181,835 | 206,354 |
| 영리법인/총계 | 90.9 | 91.2 | 91.9 | 92.5 | 93.0 | 92.9 | 93.6 |
| 비영리법인/총계 | 9.1 | 8.8 | 8.1 | 7.5 | 7.0 | 7.1 | 6.4 |

주 : 1.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이 있는 사단, 재단 등과 공공법인이 포함됨.
 2.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외국법인을 포함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2>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1995~1999)

(단위 : 억원)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영리법인 | 59,523 | 57,115 | 54,972 | 51,770 | 62,293 |
| 비영리법인 | 16,506 | 18,123 | 16,036 | 18,039 | 14,643 |
| 공공법인 | 839 | 923 | 1,314 | 1,265 | 1,385 |
| 기타공공법인 | 14,714 | 16,426 | 13,916 | 15,914 | 12,456 |
| 일반비영리법인 | 953 | 775 | 806 | 860 | 802 |
| 총법인세액 | 76,029 | 75,238 | 71,008 | 69,809 | 76,935 |
| 영리법인/총법인세액 | 78.3 | 75.9 | 77.4 | 74.2 | 81.0 |
| 비영리법인/총법인세액 | 21.7 | 24.1 | 22.6 | 25.8 | 19.0 |
| 일반비영리/총법인세액 | 1.3 | 1.0 | 1.1 | 1.2 | 1.2 |

주 : 1. 1998년 1월부터 공공법인제도가 폐지됨.
 2. 1999년도 공공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기타공공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은 일반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 통계가 산출되고 있음.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말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공공법인에는 공사 및 공기업이 포함되고 일반비영리법인에는 의료법인 및 일반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법인 세수총액에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1.7%에서 1998년 25.8%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19%로 감소하였다.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큰 이유는 비영리법인 세수에서 조합법인 및 공공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1999년의 경우 약 95%를 차지하며 총법인세액의 1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법인이 납부하는 세수는 1999년에 802억원으로 총법인세액의 1.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에 대해 세율 12%로 과세하는 법인세과세특례제도²⁾를 두고 있는데 동 제도와 관련된 과세특례제도의 개정 내역을 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공공법인 과세특례 개정내역

| 적용개시연도 | 개정 내용 |
|-------------|--|
| 1994. 1. 1. | · 당기순이익 과세 · 세율 : 조합법인(단위 농·수·축협 등, 한국은행) 10%, 일반공공법인(공사·공단 등) 3억원 이하 18%/3억원 초과 25%(일반법인세율 18/30%) |
| 1995. 1. 1. | -과세구간 변경 · 세율 : 조합법인(단위 농·수·축협 등, 한국은행) 10%, 일반공공법인(공사·공단 등) 1억원 이하 18%/1억원 초과 25%(일반법인세율 18/30%) |
| 1996. 1. 1. | - 일반공공법인의 세율 변경 · 세율 : 일반공공법인(공사·공단 등) 1억원 이하 16%/1억원 초과 25%(일반법인세율 16/28%) |
| 1998. 1. 1. | - 세율 변경 · 세율 : 조합법인 12% · 일반공공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폐지(일반법인세율 적용) |
| 1999. 1. 1. |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 · 세율 : 조합법인 12%(한국은행 제외) |

2) 법인세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은 부록 II 참조.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공공법인을 지정하고 있었으며 그 중 단위 농·수·축협 등의 조합법인과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사·공단 등의 일반공공법인은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일반법인 18/30%)로 저율과세하였다. 1996년부터 일반법인세율의 최저세율 인하에 따라 공공법인의 최저세율도 16%로 인하되었다. 1998년부터 조합법인의 세율이 12%로 인상되고 일반공공법인에 적용되던 저율과세는 폐지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부터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세법상 공공법인이라는 명칭이 사라졌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한국은행이 제외되었으므로 현재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1999년 말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5,585개로 조사되었고 부처별 법인 수는 <표 II-4>와 같다.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1,677개로 전체의 30.03%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비영리법인이 소속되어 있다. 그 다음은 22.17%의 문화관광부, 11.32%의 보건복지부 순서로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표 II-1>에 의하면 1999년 말 비영리법인의 수가 13,295개에 이르고 있는 반면 <표 II-4>에 의하면 정부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수가 5,585개이므로 총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서 이자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II-4> 주무부처별 비영리법인 현황

(단위 : 개, %)

| 계 | 국방부 | 건설 교통부 | 기획 예산처 | 외교 통상부 | 공정거래 위원회 | 정보 통신부 | 노동부 | 과학 기술부 | 환경부 | 산업 자원부 |
|-------|-----------|-----------|-----------|-----------|-------------|-----------|-----------|-----------------|------|-----------|
| 5,585 | 10 | 113 | 3 | 149 | 1 | 181 | 176 | 141 | 131 | 506 |
| 100 | 0.18 | 2.02 | 0.05 | 2.67 | 0.02 | 3.24 | 3.15 | 2.52 | 2.35 | 9.06 |
| 농림부 | 문화 관광부 | 해양 수산부 | 재정 경제부 | 국가 보훈처 | 통일부 | 교육부 | 보건 복지부 | 금융 감독 위원회 | 법무부 | 행정 자치부 |
| 154 | 1,238 | 90 | 119 | 37 | 72 | 1,677 | 632 | 1 | 35 | 119 |
| 2.76 | 22.17 | 1.61 | 2.13 | 0.66 | 1.29 | 30.03 | 11.32 | 0.02 | 0.63 | 2.13 |

주 : 1. 국정홍보처, 법제처 관할 비영리법인 없음.
 2. 1999년 말(행정자치부는 2000. 3.) 기준임.
 자료 : 부처별 내부자료.

<표 II-5>는 각 부처별 비영리법인을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총 5,585개 법인 중 44.0%인 2,458개가 사단법인, 39.5%인 2,204개가 재단법인 형태이므로 재단·사단법인이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5> 주무부처별·비영리법인형태별 현황

(단위 : 개)

| 기 관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특수법인 | 특별법인 | | | | | | | | | 의원단체 | 기타 | 합계 |
|---------------------|-------|-------|------|--------|--------------|--------|------|--------|--------|----------|-----|-----|------|----|-------|
| | | |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자 및 재투자기관 | 정부출연기관 |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보험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 계 | | | |
| 국방부 | 9 | 1 | | | | | | | | | | | | | 10 |
| 건설교통부 | 91 | 22 | | | | | | | | | | | | | 113 |
| 기획예산처 | 3 | | | | | | | | | | | | | | 3 |
| 외교통상부 ¹⁾ | 122 | 27 | | | | | | | | | | | | | 149 |
| 공정거래위원회 | 1 | | | | | | | | | | | | | | 1 |
| 정보통신부 | 153 | 15 | 13 | | | | | | | | | | | | 181 |
| 노동부 | 76 | 95 | | | | | | | | | 5 | 5 | | | 176 |
| 과학기술부 | 112 | 22 | | | 7 | | | | | | | 7 | | | 141 |
| 환경부 | 126 | 5 | | | | | | | | | | | | | 131 |
| 산업자원부 ²⁾ | 174 | 56 | | 5 | 12 | 4 | | | | 178 | 76 | 275 | 1 | | 506 |
| 농림부 | 124 | 15 | 3 | 6 | | | | | | 6 | | 12 | | | 154 |
| 문화관광부 | 624 | 387 | 20 | | | | | | | | | 201 | | 6 | 1,238 |
| 해양수산부 | 68 | 10 | 12 | | | | | | | | | | | | 90 |
| 재정경제부 | 91 | 21 | 3 | | | | | | | | 2 | 2 | 2 | | 119 |
| 국가보훈처 | 33 | 4 | | | | | | | | | | | | | 37 |
| 통일부 | 63 | 9 | | | | | | | | | | | | | 72 |
| 교육부 ³⁾ | 261 | 1,416 | | | | | | | | | | | | | 1,677 |
| 보건복지부 | 217 | 68 | 5 | | | 81 | 52 | 140 | 21 | | 294 | 48 | | | 632 |
| 금융감독위원회 | 1 | | | | | | | | | | | | | | 1 |
| 법무부 ⁴⁾ | 16 | 17 | | | | | | | | | 2 | | | | 35 |
| 행정자치부 ⁵⁾ | 93 | 14 | | | | | | | | | 12 | 12 | | | 119 |
| 총 계 | 2,458 | 2,204 | 56 | 11 | 12 | 11 | 81 | 52 | 140 | 205 | 298 | 810 | 48 | 9 | 5,585 |

주 : 1) 외교통상부 사단법인 중 공익법인 5개, 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7개임.
 2)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중 사단법인 24개, 재단법인 22개, 특별법인 3개는 중소기업청 산하법인단체이고, 사단법인 4개, 특별법인 2개는 특허청 산하법인임.
 3) 사단법인 중 공익법인 194개, 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1,413개임.
 4) 사단법인 중 공익법인 7개, 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1개임.
 5) 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1개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공익법인의 수는 1998년 말 현재 5,221개이며, 25%에 해당하는 1,309개 법인은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이고, 75%에 해당하는 3,912개 법인이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다.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중 분야별로 해당 법인의 수를 보면 학교법인이 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술·장학·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6> 고유사업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 | 계 | 출연재산 없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있는 공익법인 | | | | | | |
|------|-------|--------------------|--------------|-------|------------------|----------|-----|-----|-----|
| | | | 소계 | 학교 | 학술· 장학· 자선 | 사회 복지 | 의료 | 종교 | 기타 |
| 1993 | 3,995 | 941 | 3,054 | 1,077 | 849 | 656 | 146 | 197 | 129 |
| 1994 | 4,230 | 983 | 3,247 | 1,058 | 953 | 703 | 176 | 187 | 170 |
| 1995 | 4,461 | 990 | 3,471 | 1,055 | 1,046 | 768 | 197 | 205 | 200 |
| 1996 | 4,624 | 938 | 3,686 | 1,079 | 1,114 | 808 | 237 | 215 | 233 |
| 1997 | 5,269 | 1,357 | 3,912 | 1,101 | 1,157 | 907 | 261 | 195 | 291 |
| 1998 | 5,221 | 1,309 | 3,912 | 1,081 | 1,204 | 872 | 276 | 189 | 290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4~1999.

<표 II-7>은 공익법인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으로 구분한 수입금액을 보여준다. 1998년도의 경우 9조 2,083억원 중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5조 8,795억원으로 63.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융소득이 전체수입액의 9.5%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전체수입액의 1.2%로 미미한 수준이다.

비영리분야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총생산과 고용측면에서 비영리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영리분야에 대한 통계자료의 집계 및 발표가 미미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비영리부문 생산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

지만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국민계정』에 의한 비영리부문의 생산 및 지출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 산출시 비영리부문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자란 비영리부문 중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 비영리부문을 의미한다. 1993년도에 비영리서비스 생산자에 의한 생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었고 매년 증가하여 1998년에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7>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 | 1997 | 1998 |
|-----------|-------------------|-------------------|
| 금 용 | 6,478 (7.6) | 8,725 (9.5) |
| 부 동 산 | 1,671 (2.0) | 1,099 (1.2) |
| 수 익 사 업 | 54,203 (63.9) | 58,795 (63.9) |
| 기 타 | 22,498 (26.5) | 23,464 (25.5) |
| 총 수 입 금 액 | 84,850 (100.0) | 92,083 (100.0)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 국세청 내부자료.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0.98%에서 1998년 1.09%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생산 측면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것과 같은 추세이다. 그러나 비영리 생산자의 생산이 2.0~2.5% 규모인데 반해 비영리법인의 지출비중은 0.98~1.09% 수준이므로 비영리부문이 경제 전체에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비영리생산자의 생산에는 가사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II-8>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자의 생산

(단위 : 10억원, %)

| | 국내총생산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 ¹⁾ | |
|------|-----------|----------------------------------|-----|
| | | 금 액 | 비 중 |
| 1993 | 277,496.5 | 5,633.5 | 2.0 |
| 1994 | 323,407.1 | 6,646.0 | 2.1 |
| 1995 | 377,349.8 | 8,093.7 | 2.1 |
| 1996 | 418,479.0 | 9,510.1 | 2.3 |
| 1997 | 453,276.4 | 10,656.6 | 2.4 |
| 1998 | 444,366.5 | 10,895.9 | 2.5 |

주 : 당해연도 경상가격임.

1) 가사서비스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1999.

한국은행, 『1998년 국민계정(확정)』, 2000.

<표 II-9>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

(단위 : 10억원, %)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최종소비지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법인 | | |
|------|-----------------|-----------|----------------|------------------|--------------|
| | | | 금 액 | 국내총생산에 대한지출비중 | 최종소비 지출비중 |
| 1993 | 277,496.5 | 177,514.2 | 2,732.8 | 0.98 | 1.54 |
| 1994 | 323,407.1 | 208,826.6 | 3,242.1 | 1.00 | 1.55 |
| 1995 | 377,349.8 | 242,840.0 | 3,833.0 | 1.01 | 1.58 |
| 1996 | 418,479.0 | 276,121.5 | 4,400.1 | 1.05 | 1.59 |
| 1997 | 453,276.4 | 300,646.1 | 4,801.7 | 1.06 | 1.60 |
| 1998 | 444,366.5 | 292,178.0 | 4,837.5 | 1.09 | 1.66 |

주 : 당해연도 경상가격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1999.

한국은행, 『1998년 국민계정(확정)』, 2000.

비영리부문의 지출 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51.5%(1998년)를 차지한 교육이다. 그 다음으로 오락·문화가 13.9%, 사회보장이 6.2%, 의료보건의 2.2% 순으로 나타나고 분류되지 않은 분야가 26.3%를 차지한다.

<표 II-10>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단위 : 10억원, %)

| | 의료보건 | | 오락·문화 | | 교육 | | 사회보장 | | 기타서비스 | | 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1993 | 61.6 | 2.3 | 426.7 | 15.6 | 1,304.9 | 47.7 | 160.8 | 5.9 | 778.8 | 28.5 | 2,732.8 |
| 1994 | 74.3 | 2.3 | 489.0 | 15.1 | 1,531.6 | 47.2 | 197.1 | 6.1 | 950.1 | 29.3 | 3,242.1 |
| 1995 | 87.9 | 2.3 | 568.7 | 14.8 | 1,898.7 | 49.5 | 232.1 | 6.1 | 1,045.5 | 27.3 | 3,833.0 |
| 1996 | 96.8 | 2.2 | 614.8 | 14.0 | 2,207.5 | 50.2 | 261.9 | 6.0 | 1,219.3 | 27.7 | 4,400.1 |
| 1997 | 110.1 | 2.3 | 672.9 | 14.0 | 2,454.1 | 51.1 | 291.4 | 6.1 | 1,273.2 | 26.5 | 4,801.7 |
| 1998 | 109.4 | 2.2 | 699.4 | 13.9 | 2,585.4 | 51.5 | 311.1 | 6.2 | 1,319.7 | 26.3 | 5,025.1 |

주 : 당해연도 경상가격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1999.

비영리부문이 고용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각 비영리분야 종사자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과 관련된 통계 중 비영리부문만을 분류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고용규모만을 파악하면 <표 II-11>과 같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를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회사이외의 법인이란 법인형태이면서 상법상 회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이 포함되고 비법인단체에는 종친회, 동창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이외의

법인과 비법인단체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대부분 비영리법인 성격의 단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의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17.0% 수준이다.

<표 II-11>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

| | | 계 |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 회사이외의 법인 | 비법인 단체 |
|------|------|------------|-----------|-----------|-------------|-----------|
| 1994 | 종사자수 | 12,583,630 | 5,871,322 | 4,777,310 | 1,639,316 | 295,682 |
| | 비중 | 100.0 | 46.7 | 38.0 | 13.0 | 2.3 |
| 1995 | 종사자수 | 13,634,273 | 6,351,911 | 5,276,275 | 1,761,287 | 244,800 |
| | 비중 | 100.0 | 46.6 | 38.7 | 12.9 | 1.8 |
| 1996 | 종사자수 | 14,006,754 | 6,309,910 | 5,489,589 | 1,908,835 | 298,420 |
| | 비중 | 100.0 | 45.0 | 39.2 | 13.6 | 2.1 |
| 1997 | 종사자수 | 13,470,343 | 6,174,607 | 5,135,369 | 1,895,773 | 264,594 |
| | 비중 | 100.0 | 45.8 | 38.1 | 14.1 | 2.0 |
| 1998 | 종사자수 | 12,416,558 | 5,755,775 | 4,547,927 | 1,822,499 | 290,357 |
| | 비중 | 100.0 | 46.4 | 36.6 | 14.7 | 2.3 |
| 1999 | 종사자수 | 12,920,289 | 6,218,141 | 4,640,240 | 1,748,922 | 312,986 |
| | 비중 | 100.0 | 48.1 | 35.9 | 13.5 | 2.4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3. 비영리법인 관련세제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1)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

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 공익법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표 II-12>와 같다.

<표 II-12> 비영리법인의 손금한도

| | 한 도 |
|---|--|
| 일반비영리법인 |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합산한 금액 |
| 학교, 사회복지, 국립대·서울대학교 병원, 조직위원회(조특법 제74조 제1항)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
| 협동조합중앙회(조특법 제74조 제2항) | 수익사업소득금액의 80% |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① 이자소득 ②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③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④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³⁾의 100분의 50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3) 수익사업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제24조 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에서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의한 결손금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손금산입할 수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 월드컵 축구대회조직위원회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달하는 금액까지는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진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단, 출연받는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수를 합하여 총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나,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상속·증여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증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등 세법에 정한 사후관리에 위배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추징한다.

3) 부가가치세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
-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서의 입장
-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사업을 하는 단

체와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교육용역이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예술창작품이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은 제외한다.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③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 ④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이 포함된다.

4) 특별부가세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토지 등을 출연한 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140조 제3항).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거나, 1년 이상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출연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과 양도소득 특례신고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03조, 제104조).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이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이고 양도소득 특례신고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면제하는 방법이다(법인세법 제103조 제2항).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한국보훈복지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

82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운
 영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세특
 례제한법 제83조).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

5) 지방세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
 법과 별도로 비영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각종 지
 방세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표 II-13>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13>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
|--|

자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가)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소유권 취득시⁴⁾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의 2%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07조). 비영리사업자 외에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이나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⁵⁾)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나)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비영리사업자 외에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

4)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말함)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4조).

5)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말한다.

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가 동 중앙회 및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
정·분할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 등기

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7조). 상속이 아니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5%가 등록세로 부과되나,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0.8%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31조).

다) 재산세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법 제181조).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84조)과 주민공동체소유 건축물, 별정우체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이 재산세 면제 대상이다.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라)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⁶⁾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주민공동체소유 건축물, 별정우체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도 면제 대상이다. 단,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나. 기부자에 대한 과세

1) 법인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6)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일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부금⁷⁾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2000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동 조항은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다⁸⁾.

2) 개인

개인의 경우 다음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3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을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금품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7) 부록 III 참조.

8) 부록 IV 참조.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한도로 공제한다. 10%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가 포함된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 이후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 비영리 분야별 세제지원

1) 비영리기관에 대한 세제

비영리분야간의 세제상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세목별 조세지원대상을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종교의 5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분야별로 대상 단체의 수를 비교하는 것의 의미는 미미하고 분야별 세제지원금액으로 지원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련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야별 세제지원 대상단체의 실태를 분석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상속·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추가로 주식 등을 기부 받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법인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37개의 비영리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분야별 해당 사업은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사업 분야

(단위 : 개, %)

| | 교육 | 보건 | 사회보장 | 문화 | 종교 | 기타 | 합계 |
|-----|------|------|------|-----|-----|------|-----|
| 사업수 | 6 | 6 | 4 | 3 | 1 | 17 | 37 |
| 비 중 | 16.2 | 16.2 | 10.8 | 8.1 | 2.7 | 46.0 | 100 |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나) 특별부가세

실현된 자본이득은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의 자본이득에 두 번 과세하는 것이다. 일부 특정 비영리분야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조세지원을 적용 받는 비영리법인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박물관 등, 농업협동조합,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교육, 사회보장,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지방세

지방세는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측면에서의 조세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표 II-15>는 지방세법상의 분야별 비영리사업자 수를 나타낸다. 지방세 조세지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체는 6개이며,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단체가 2개, 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분야에 각 1개의 단체가 해당된다.

<표 II-15> 지방세법에 의한 비영리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보장 | 문화 | 종교 | 기타 | 합계 |
|----|----|------|----|----|----|----|
| 1 | 1 | 2 | 0 | 1 | 1 | 6 |

자료 : 지방세법.

2) 기부자에 대한 세제

기부한 자에 대한 세제는 기부 받는 비영리법인의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표 II-16>은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이고 <표 II-17>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분류한 것이다.

<표 II-16> 법정기부금의 비영리분야별 분류

| 교육 | 보건 | 사회보장 | 문화 | 종교 | 기타 | 합계 |
|----|----|------|----|----|----|----|
| 3 | 0 | 4 | 2 | 0 | 7 | 16 |

자료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표 II-17> 지정기부금의 비영리분야별 분류

| 교육 | 보건 | 사회보장 | 문화 | 종교 | 기타 | 합계 |
|----|----|------|----|----|----|----|
| 8 | 5 | 13 | 6 | 2 | 28 | 62 |

자료 : 법인세법.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각 세목별로 세계지원이 주어지는 비영리분야의 비중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거된 세계지원 대상분야를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각 분야별 지원규모를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세계지원의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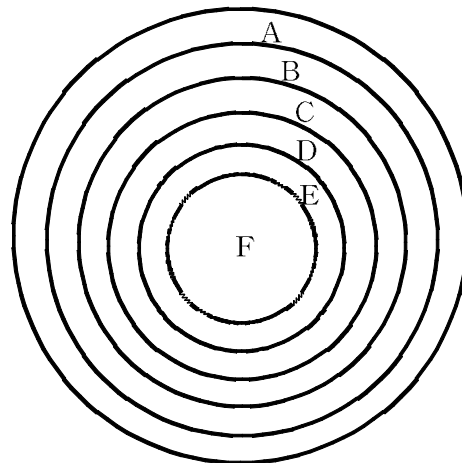
Ⅲ. 외국의 비영리법인 현황 및 세제

1. 미국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그림 Ⅲ-1]은 미국의 비영리기관을 과세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그 포함관계를 보여준다. A는 미국의 모든 사회기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정부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B는 비영리기관을 의미하고 C는 모든 면세기관을 의미한다. D는 사회복지적 면세기관, E는 면세 가능한 기부금 대

[그림 Ⅲ-1] 미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상 면세기관, F는 면세 가능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의 정치적 선전활동이 금지되는 면세기관(면세자선기관)이다. 즉 세법 제501조(c)(3)에 해당하며 면세기관으로서의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으로 교육, 종교, 과학, 문학, 아마추어 스포츠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D와 F 모두 특정 후보에 찬성 또는 반대하고자 정치적 운동에 참여 또는 개입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는 금지된다.

모든 면세기관(C)에서 사회복지적 면세기관(D)을 제외한 범위(C-D)에 속하는 기관은 비영리기관 중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면세기관이다. 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기업협회, 농협, 신용협동조합, 노동조합, 사교 및 오락클럽, 상호보험회사, 법률서비스단체, 병원서비스협동단체 등이 있다. 사회복지적 면세기관(D) 중 면세 가능한 기부금 대상 면세기관(E)을 제외한 범위(D-E)에 해당하는 기관은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 로비 활동에 가담할 수는 있어도,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가 면세 가능한 기부금은 모을 수 없는 면세기관들이다. 예를 들면, 입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만 면세되는 입법·선거운동기관(Action Organization), 사회복지 단체, 보조 실업수당 신탁, 고용인 단체, 고용인 연금 신탁, 탄진폐증을 위한 신탁 등이 있다. 면세 가능한 기부금 대상 면세기관(E)에서 면세 공익기관(F)을 제외한 범위(E-F)에 해당하는 기관은 면세 가능한 기부금을 모을 수도 있으면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전활동을 할 수 있는 면세기관들이다. 예를 들면, 전쟁 참전자 단체, 공동묘지 사업체 등이 있다.

미국 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에서는 자선과 공익의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을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501조(c)(3)의 종교(Religious), 자선(Charitable), 교육(Educational) 등의 기관으로 제한되는 면세 공익기관이 F에 해당하며, 면세 가능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의 정치적 선전활동은 금지된다. 이러한 면세 공익기관의 세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인, 지역금고,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전적으로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점검, 문학,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과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관련 기관(경기장 또는 장비에 관련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 및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등으로서, 순이익이 주주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요 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로비활동이어서도 안 되고, 공직의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거나 반대하지(출판 또는 연설문의 배포 행위를 포함) 않는 기관을 말한다.”

나. 비영리법인 현황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이래 면세 단체의 수는 해마다 늘어왔고 1997년도 현재 면세 단체의 수는 123만 2,214개로 1991년 대비 16.8% 증가하였다. <표 III-2>는 각 연도의 면세 단체를 고유목적사업별로 보여준다.

1991~1996년 기간 중 두드러진 변화를 보면, 연금 등을 위한 지주회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비영리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종교, 자선,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단체는 142,473개에서 139,512개로, 병원서비스단체는 72개에서 54개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제501조(c)(3)에 해당하는 단체는 종교, 자선, 교육 분야 등 그 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516,554개에서 654,186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제501조(d)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도 93개에서 113개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III-1> 미국의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 수

(단위 : 개)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비과세단체의 수 | 1,055,207 | 1,085,206 | 1,118,131 | 1,138,598 | 1,164,789 | 1,188,510 | 1,232,214 |

자료 : Annual Report, <http://www.irs.gov/>

<표 III-2> 연도별·유형별 면세단체 수

(단위 : 개)

| | 면세단체의 유형 | 단체의 수 | | | | | |
|------------|----------------------|-----------|-----------|-----------|-----------|-----------|-----------|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501(c)(1) | 의회법하에서 구성된 관할기관 | 9 | 9 | 9 | 9 | 19 | 20 |
| 501(c)(2) | 재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 6,408 | 6,529 | 6,739 | 9,967 | 7,025 | 7,100 |
| 501(c)(3) | 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 516,554 | 546,100 | 575,690 | 599,745 | 626,226 | 654,186 |
| 501(c)(4) | 사회복지단체 | 142,473 | 142,673 | 142,325 | 140,143 | 139,451 | 139,512 |
| 501(c)(5) | 노동, 농업조합 | 72,009 | 71,012 | 70,416 | 68,144 | 66,662 | 64,955 |
| 501(c)(6) | 기업협회 | 68,442 | 70,871 | 72,901 | 74,273 | 75,695 | 77,274 |
| 501(c)(7) | 사교 및 오락클럽 | 63,922 | 64,681 | 64,924 | 65,273 | 65,501 | 60,845 |
| 501(c)(8) | 친목(우애)단체 | 98,840 | 93,544 | 93,728 | 92,284 | 92,115 | 91,972 |
| 501(c)(9) | 자원고용인단체 | 14,708 | 14,986 | 15,048 | 14,835 | 14,681 | 14,486 |
| 501(c)(10) | 국내친목(우애)단체 | 18,360 | 21,415 | 20,827 | 21,215 | 21,046 | 20,925 |
| 501(c)(11) | 퇴직교사를 위한 기금 | 10 | 10 | 11 | 11 | 11 | 13 |
| 501(c)(12) | 구제생명보험협회 | 5,984 | 6,103 | 2,177 | 6,221 | 6,291 | 6,343 |
| 501(c)(13) | 공동묘지사업체 | 8,781 | 9,025 | 9,184 | 9,294 | 9,433 | 9,562 |
| 501(c)(14) | 신용협동조합 | 6,219 | 5,559 | 5,637 | 5,391 | 5,225 | 5,157 |
| 501(c)(15) | 상호보험회사 | 1,147 | 1,157 | 1,165 | 1,161 | 1,185 | 1,212 |
| 501(c)(16) | 곡물경작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인 | 20 | 23 | 33 | 23 | 23 | 23 |
| 501(c)(17) | 보조실업수당 신탁 | 644 | 625 | 611 | 601 | 583 | 565 |
| 501(c)(18) | 고용인연금신탁 | 8 | 8 | 4 | 4 | 3 | 2 |
| 501(c)(19) | 전쟁참전자 단체 | 27,962 | 28,096 | 29,974 | 30,282 | 30,828 | 31,464 |
| 501(c)(20) | 법률서비스 단체 | 206 | 217 | 213 | 181 | 141 | 131 |
| 501(c)(21) | 담진폐증을 위한 신탁 | 23 | 23 | 22 | 25 | 25 | 25 |
| 501(c)(22) | 중복취업자연금 | 0 | 0 | 0 | 0 | 0 | 0 |
| 501(c)(23) | 1880년 이전에 설립된 퇴역군인협회 | 2 | 2 | 2 | 2 | 2 | 2 |
| 501(c)(24) | ERISA 제4049조에 기술된 신탁 | 0 | 1 | 1 | 1 | 1 | 1 |
| 501(c)(25) | 연금 등을 위한 지주회사 | 181 | 290 | 374 | 479 | 638 | 794 |
| 501(d) | 종교단체 | 93 | 92 | 96 | 99 | 107 | 113 |
| 501(e) | 병원서비스 단체 | 72 | 68 | 69 | 68 | 61 | 54 |
| 501(f) | 교육기관을 위한 서비스단체 | 1 | 1 | 1 | 1 | 1 | 1 |
| 521 | 농민협동조합 | 2,129 | 2,086 | 1,950 | 1,866 | 1,810 | 1,773 |
| | 계 | 1,055,545 | 1,085,206 | 1,118,131 | 1,138,598 | 1,164,789 | 1,188,510 |

자료 : IRS, 1996 Annual Data Book, Publication 55B.

세법 제501조(c)(3)에 의한 면세자선단체 중 1996년도에 세무신고서를 제출한 건수는 149,902개이며,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표 III-3>과 같다. 수입 중 66.51%가 프로그램수입이고 19.46%가 기부금수입이다. 투자자산 양도소득과 운용소득이 각각 4.67%, 4.18%이고 그 외의 항목인 회비, 임대소득, 사업활동수익 등은 그 비중이 미미하다. 지출 측면에서도 역시 프로그램에 지출한 것이 86.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2.15%인 운영비이다.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은 약 662억 2,700만 달러에 달한다.

<표 III-3> 비영리자선단체¹⁾의 규모 및 운영(1996년)

(단위 : 건, 백만 달러, %)

| 세무신고건수 | 149,902 | |
|---------------|-----------|--------|
| 총자산 | 1,291,492 | |
| 총수입 | 702,291 | 100.00 |
| 기부금 등 | 136,677 | 19.46 |
| 프로그램수입 | 467,103 | 66.51 |
| 회비 등 | 6,134 | 0.87 |
| 운용소득 | 29,333 | 4.18 |
| 임대소득 | 1,656 | 0.24 |
| 기타 투자소득 | 6,583 | 0.67 |
| 투자자산등양도소득 | 32,128 | 4.67 |
| 사업활동수익 | 2,105 | 0.30 |
| 재고자산판매이익 | 3,636 | 0.52 |
| 기타 수익 | 18,837 | 2.68 |
| 총비용 | 636,065 | 100.00 |
| 프로그램지출 | 549,857 | 86.45 |
| 운영비 | 77,299 | 12.15 |
| 자금조달비용 | 6,037 | 0.95 |
| 시설비 | 2,872 | 0.45 |
| 총비용을 초과하는 총수입 | 66,227 | |

주 : 1) 세법 제501조(c)(3).

자료 :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Winter 1999/2000, Publication 1136, Rev.2/00

<표 III-4>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과세 현황이다. 1991년과 1995년의 세무신고건수와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 금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건수가 1991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반면 세액은 136%의 증가가 있었다.

<표 III-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

(단위 : 건수, 천 달러)

| | 세무신고건수 | 고유목적사업소득세 | 총소득세 |
|------|--------|-----------|---------|
| 1991 | 32,690 | 116,605 | 116,933 |
| 1992 | 31,122 | 132,358 | 132,378 |
| 1993 | 32,638 | 180,046 | 181,437 |
| 1994 | 35,657 | 191,492 | 195,191 |
| 1995 | 36,394 | 275,562 | 277,481 |

자료 : IRS.

<표 III-5>는 기부금 수혜단체별로 그 비중을 나타낸다. 전체 비영리법인을 종교단체, 정부기관, 재단, 비영리서비스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으로 분류하였는데, 지출 비중은 종교단체, 비영리서비스기관, 정부기관, 재단, 기타 비영리기관 순이다. 비영리서비스기관은 고유목적사업별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분야이다.

<표 III-6>은 비영리법인 중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자원 구성 내역 및 비중을 민간재단의 규모별로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민간재단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과 그 성격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이라 이해하면 된다.

대규모 민간재단의 경우 자산매각이익이 47%로 가장 큰 자원조달 수단이며 배당 및 이자수입, 기부금의 순서로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중·소규모 민간재단의 경우 기부금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큰 자원

인데 재단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짐

<표 III-5> 민간자선기부의 수혜단체 유형별 분류(1996년)

(단위 : 10억달러, %)

| | 금 액 | 비 중 |
|-------------|-------|-----|
| 종교집회 | 66.3 | 48 |
| 정부기관 | 12.7 | 9 |
| 재단 | 8.3 | 6 |
| 비영리서비스기관 | 45.5 | 33 |
| 교육 | 15.0 | 11 |
| 보건 | 11.2 | 8 |
| 지역사회/법률 서비스 | 9.5 | 7 |
| 문화·예술 | 4.2 | 3 |
| 공공 | 5.6 | 4 |
| 기타 비영리기관 | 6.1 | 4 |
| 계 | 138.9 | 100 |

자료 : Lester M. Salamon, *America's nonprofit sector*, 1999.

<표 III-6> 민간재단 규모별 재원구성비

(단위 : %)

| | 기부금 | 자산매각이익 | 유가증권에 의한 배당 및 이자수입 | 기타 이자수입 | 기타소득 |
|-------------------|-----|--------|--------------------------|------------|------|
| 전 체 | 29 | 37 | 24 | 4 | 6 |
| 소규모 ¹⁾ | 65 | 8 | 13 | 4 | 10 |
| 중규모 ²⁾ | 43 | 25 | 20 | 4 | 8 |
| 대규모 ³⁾ | 17 | 47 | 27 | 4 | 5 |

주 : 1) 총자산의 시가가 1~1백만 달러

2) 총자산의 시가가 1백만~5천만 달러

3) 총자산의 시가가 5천만 달러 이상

자료 : SOI bulletin.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단의 규모가 클수록 출연자산 및 수익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부금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소규모의 재단보다 작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96년에 약 146만개의 면세 비영리법인이 있었다. 이중 약 119만개의 단체가 IRS에 등록된 단체이고 추가로 약 27만개의 종교모임이 있다. IRS에 등록된 단체는 자선단체, 사회보장조직, 기타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96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선단체는 65만 4천개이고 이들 그룹에는 병원, 대학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선단체가 포함된다. 그 외에 14만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직이 있고 이들 조직의 대부분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기타 면세조직이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기업연합, 레크리에이션클럽, 상이군인조직, 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기부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표 III-7> 미국의 면세 비영리법인 수 추이(1989~1996)

(단위 : 천개, %)

| | 1989 | | 1992 | | 1996 | | 1989~1996 변동률 |
|----------------------------------|-------|-------|-------|-------|-------|-------|------------------|
| | 법인 수 | 비중 | 법인 수 | 비중 | 법인 수 | 비중 | |
| 총 민간비영리법인 | 1,262 | 100.0 | 1,351 | 100.0 | 1,455 | 100.0 | 15.3 |
| IRS에 등록된 면세조직 | 993 | 78.7 | 1,085 | 80.3 | 1,189 | 81.7 | 19.7 |
| 501(c)(3)에 의한 자선단체 ¹⁾ | 464 | 36.8 | 546 | 40.0 | 654 | 44.9 | 40.9 |
| 총 공공자선단체 | 422 | 33.4 | 500 | 37.0 | 600 | 41.2 | 42.2 |
| 재무자료 보고단체 | 138 | 10.9 | 165 | 12.2 | 200 | 13.7 | 44.9 |
| 비공공자선단체 | 0.5 | 0.0 | 0.5 | 0.0 | 1 | 0.1 | 100.0 |
| 공공자선단체 | 137 | 10.9 | 165 | 12.2 | 199 | 13.7 | 45.3 |
| 운영단체 | 124 | 9.8 | 148 | 11.0 | 178 | 12.2 | 43.5 |
| 후원단체 | 13 | 1.0 | 16 | 1.2 | 21 | 1.4 | 61.5 |
| 상호부조단체 | 0.5 | 0.0 | 0.5 | 0.0 | 0.6 | 0.0 | 20.0 |
| 비 보고단체 ²⁾ | 284 | 22.5 | 335 | 24.8 | 400 | 27.5 | 40.8 |
| 민간재단 | 42 | 3.3 | 46 | 3.4 | 54 | 3.7 | 28.6 |
| 501(c)(4)에 의한 사회보장조직 | 141 | 11.2 | 143 | 10.6 | 140 | 9.6 | -0.7 |
| 기타 면세조직 | 388 | 30.7 | 396 | 29.3 | 395 | 27.1 | 1.8 |
| 종교모임 ³⁾ | 269 | 21.3 | 266 | 19.7 | 266 | 18.3 | -1.1 |

주 : 1)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을 포함함. 일부 단체의 경우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IRS에 면세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제501조(c)(3)의 단체를 포함하지는 않음.

2) 총수입이 25,000달러 미만인 보고단체와 신고하지 않은 단체 포함.

3) IRS에 등록되었고 제501조(c)(3)자선단체에 포함된 종교모임인 75,000개는 제외되었음.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표 III-8> 비영리법인¹⁾ 수의 분야별 증가율(1989~1996)

(단위 : 천개, %)

| | 1989 | 1996 | 증가율 |
|-----------|---------|---------|-------|
| 문화/예술 | 13,817 | 19,509 | 41.2 |
| 교육 | 16,939 | 28,235 | 66.7 |
| 환경 및 동물보호 | 3,305 | 5,799 | 75.5 |
| 보건 | 23,039 | 28,234 | 22.5 |
| 인적서비스 | 45,156 | 66,514 | 47.3 |
| 국제교류 | 1,196 | 1,816 | 51.8 |
| 공공/사회 급여 | 8,352 | 13,615 | 63.0 |
| 종교 | 5,764 | 8,846 | 53.5 |
| 기타 | 6,119 | 5,036 | -17.7 |
| 계 | 123,687 | 177,604 | 43.6 |

주 : 1) IRS에 보고된 자선단체 중 운영단체로 분류된 비영리조직, 민간재단, 외국조직, 정부협력조직 등 제외.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1996 기간 중에 분야별 비영리법인의 증가율은 환경 및 동물보호 관련 단체가 75.5%로 가장 크고 평균증가율은 43.66%에 이르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대부분이 빈약한 재원을 가진 아주 작은 조직이고 자원봉사자와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 수백명의 종업원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지출을 가진 대규모 전문 조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재원은 이러한 거대한 조직에 집중된다.

민간재단을 제외한 자선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1년에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단체는 약 4%이다. 이에 해당하는 6,770개 단체가 비영리분야 총자산의 3/4 이상, 총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약 41%에 해당하는 단체(72,447개)가 10만 달러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총비용의 약 0.6%만을 차지한다.

병원과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분야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용, 고용

의 비중은 비례적이지는 않다. 병원은 조직 수 면에서는 2.8%를 차지하나 지출은 46%를 초과한다. 사립대학은 조직 수 면에서 약 1.4%이지만 지출은 12%를 차지한다. 반대로 인적 서비스단체는 자선단체 수의 1/3이지만 지출은 13%에 불과하다.

<표 III-9> 총지출 수준별 재원조달 및 지출 비중

(단위 : %)

| 총지출규모 | 총자산 | 공공지원 | 총지출 | 단체 수 |
|---------------------|------|------|------|------|
| 10,000,000 달러 이상 | 76.7 | 50.8 | 79.0 | 3.8 |
| 5,000,000~9,999,999 | 6.1 | 11.7 | 6.6 | 2.9 |
| 1,000,000~4,999,999 | 9.3 | 21.2 | 9.3 | 12.5 |
| 500,000~999,999 | 2.7 | 5.8 | 2.1 | 9.1 |
| 100,000~499,999 | 3.4 | 7.7 | 2.4 | 30.9 |
| 100,000 달러 미만 | 1.7 | 2.9 | 0.6 | 40.8 |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미국 경제 전체에서 비영리분야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의 약 7%(1996년), 민간부문 순부의 약 5%(1994년),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고용인구의 약 12%(1996년)를 차지한다. 비영리부문의 국민소득 비중에 비해 고용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에 자선기부는 개인소득의 1.9%로 1964년 이후 평균 2.3%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부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12>를 보면 민간 기부의 재원을 모두 합한 연평균 실질증가율(물가상승률 조정 후)은 1977년과 1996년 사이에 약 2.9%이다. 같은 기간에 문화·예술과 교육/연구 분야가 5.1%, 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보건서비스에 대한 민간 기부의 상승률은 1.0%로 아주 낮은 편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민간기부도 평균 증가율인 2.9%를 밑도는 2.8%이

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중반에 걸쳐 하락했고 최근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0> 미국경제에서 비영리분야의 비중

(단위 : %)

| | 부문별 국민소득 ¹⁾ | | 순부 ¹⁾ | 부문별 고용 | |
|-------|------------------------|------|------------------|--------------------|-------------------|
| | 1996 | 1997 | 1994 | 1996 | 1997 |
| 가 계 | - | - | 95.0 | - | - |
| 비 영 리 | 6.7 | 5.5 | 5.0 | 11.7 ²⁾ | 9.3 ²⁾ |
| 정 부 | 14.2 | 14.9 | - | 16.5 | 18.6 |
| 영리기업 | 79.1 | 79.6 | - | 71.8 | 72.2 |

주 : 1)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단체(주로 교회와 연간 수입이 25,000달러 미만인 조직)의 순부는 제외됨. 자산과 부채의 측정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음.

2) 비영리분야 자원봉사자, 전일·반일 근무자 포함.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표 III-11> 재원별 자선 기부금(1996년)

(단위 : %)

| 개 인 | 유 산 | 법 인 | 재 단 |
|------|-----|-----|-----|
| 79.6 | 6.9 | 5.6 | 7.9 |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표 III-12> 민간기부금의 연평균 증가율(1977~1996)

(단위 : %)

| 단 체 | 증 가 율 |
|---------------|-------|
| 모든 비영리분야 | 2.9 |
| 보건서비스 외 | 3.2 |
| 보건서비스 | 1.0 |
| 교육/연구 | 5.3 |
| 종교단체 | 2.8 |
| 사회 및 법률 서비스 | 3.6 |
| 시민·사회·우애조합 단체 | 4.4 |
| 문화·예술 | 5.1 |
| 정부지급 | 5.7 |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지급은 민간부문 기부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표 III-13>은 1977년과 1996년 기간 중 비영리분야별 정부지급과 민간부문 지급·기부금 및 각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우애조합 단체에 대한 민간부문 지급 및 기부금의 증가율은 정부지급이 13%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150%를 보이고 있다. 교육/연구는 두 가지 부문이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 역시 경제 전체 증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1977년과 1996년 사이의 정부지급과 민간지급은 비영리 모든 분야에서 GDP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III-13> 비영리 하부조직에 의한 정부지급과 비영리분야 기부금
(단위 : 10억달러, %)

| | 1977 | | 1996 | | 증가율 (1977~1996) | |
|---------------|----------|--------------------|----------|--------------------|--------------------|--------------------|
| | 정부 지급 | 민간부문 지급, 기부금 | 정부 지급 | 민간부문 지급, 기부금 | 정부 지급 | 민간부문 지급, 기부금 |
| 보건서비스 | 38.60 | 67.9 | 127 | 159.6 | 229 | 135 |
| 교육/연구 | 11.60 | 39.4 | 23.1 | 81.7 | 100 | 107 |
| 종교단체 | - | 39.6 | - | 71.4 | - | 81 |
| 사회·법률 서비스 | 13.00 | 10.0 | 39.9 | 28.3 | 207 | 183 |
| 시민·사회·우애조합 단체 | 4.80 | 4.0 | 5.4 | 10.0 | 13 | 150 |
| 문화·예술 | 0.44 | 2.9 | 1.5 | 6.7 | 241 | 131 |
| GDP | | | | | 62 | |

주 : 1996년 불변가격 수치임.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비영리법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다음의 7개 분야에 이루어진다. ① 사회서비스, 고용과 훈련, 사회개발을 포함한 사회보장, ② 초·중등교육,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연구, ③ 보건재정과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④ 주택, 음식, 기타 소득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소득지원, ⑤ 국제원조, ⑥ 문화/예술, ⑦ 환경보호.

<표 III-14>에 반영된 프로그램지출은 1980년에 3,454억 달러(1998년 불변가격)에 달한다. 당시 총연방지출은 1조 2천억 달러였다. 다시 말해서, 비영리법인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지출은 총연방지출의 약 1/4을 차지한다. 연방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의료분야로 지출액이 프로그램지출 총액의 약 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소득지원이 20%, 사회보장이 15%, 교육/연구가 12%이고 국제원조, 문화예술, 환경보호 분야가 합해서 4% 정도를 차지한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지출액의 GDP 비중은 1980년에 비해 1997년에는 상당히 낮다.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감

안한 불변가격으로 볼 때 1980년에 3,454억 달러에서 1982년에는 3,391억 달러, 1997년에는 5,541억 달러이다. 그러나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의료부문(medicare, medicaid)을 제외하고 보면 금액이 1990년까지 감소하였고 의료와 소득지원을 제외하면 1997년까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 비영리활동 중 프로그램 부문에 대한 연방지출(1980~1997)

(단위 : 10억 달러, %)

| | 모든 프로그램 | | 의료(medicare, medicaid)제외 | | 의료(medicare, medicaid)와 소득지원 제외 | | 연방지출의 GDP 비중 (1980=100) |
|-----------|---------|--------------|--------------------------|-----|---------------------------------|-----|-------------------------|
| | 지출 | 1980년 대비 변동액 | 1980년 대비 변동 | | 1980년 대비 변동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1980 | 345.4 | | | | | | 100 |
| 1982 | 339.1 | -6.3 | -25.9 | -14 | -26.9 | -24 | 76 |
| 1983 | 342.5 | -2.9 | -25.7 | -14 | -31.6 | -28 | 70 |
| 1984 | 345.6 | +0.2 | -27.1 | -15 | -31.8 | -28 | 65 |
| 1985 | 365.2 | +19.8 | -20.9 | -11 | -27.6 | -24 | 66 |
| 1986 | 363.0 | +17.7 | -23.0 | -12 | -30.0 | -26 | 62 |
| 1987 | 361.7 | +16.3 | -26.2 | -14 | -32.6 | -29 | 58 |
| 1988 | 371.7 | +26.3 | -19.8 | -11 | -30.6 | -27 | 57 |
| 1989 | 382.3 | +36.9 | -16.1 | -9 | -29.1 | -26 | 56 |
| 1990 | 402.1 | +56.7 | -8.4 | -5 | -25.1 | -22 | 58 |
| 1991 | 426.9 | +81.5 | +8.7 | +5 | -17.9 | -16 | 63 |
| 1992 | 464.0 | +118.6 | +24.4 | +13 | -13.6 | -12 | 64 |
| 1993 | 488.7 | +143.3 | +38.5 | +21 | -8.6 | -8 | 66 |
| 1994 | 514.9 | +169.5 | +51.6 | +28 | -5.9 | -5 | 65 |
| 1995 | 537.3 | +191.9 | +59.6 | +32 | -4.1 | -4 | 65 |
| 1996 | 543.5 | +198.1 | +56.4 | +31 | -6.1 | -5 | 62 |
| 1997 | 554.1 | +208.7 | +59.0 | +32 | -4.6 | -4 | 60 |
| 1982~1997 | 6,802.6 | +1,276.4 | +105.1 | +4 | -325.8 | -18 | 63 |

주 : 1998년 불변가격 수치임.

자료 : Elizabeth T. Boris & C. Eugene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1999.

다.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

기본적으로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의료비 또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에서 얻는 수입 등은 병원의 고유목적인 의료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비과세 처리된다. 대학교의 경우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특수과정의 개설 및 학회의 주최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대학 고유활동의 일부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가 부과된다. 세법에 명시된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기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한다. 단,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소득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유목적 무관소득에서 제외된다.

- 로열티, 배당, 이자, 연금(지배회사로부터 받은 특정 연금과 이자)
- 임대료소득(리스한 자산 또는 부채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 특정 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
- 연구 수행에 의한 대학 또는 병원과 국가 및 주정부, 그 산하 기관의 소득

- 공익적 연구를 주활동으로 하는 기관의 연구로 인한 소득
- 노동조합 또는 농업조합이 은퇴한 노약자를 위한 주택·병원 등 시설을 설립·운영하는데 쓰는 소득
- 교회·자선단체·교육기관·사회복지기관·노동 및 농업조합이 실시하는 국제·국가·주·지방 차원의 전시·박람회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 노동조합·농업조합과 기업협회가 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무역박람회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 대금업자에게 맡겨진 담보소득(securities)(대금업자의 담보소득 사용으로 인한 수입 포함) 중개인에게 위임한 증권으로부터의 투자소득
- 비과세 자선단체의 회원 리스트의 임대·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회비

배당·이자·로열티 등과 같이 투자소득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 비영리기관이 지배하는 회사나 단체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소득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부채를 통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투자소득은 비관련부채소득(unrelated debt-financed income)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나) 증여세(Gift Tax)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상속 또는 증여시 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된 단체⁹⁾에 대한 기부재산에 대해서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① 연간 1만 달러, ② 학비(등록금),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한 증여, ③

9) 본장의 비영리법인의 공익성테스트 부분 참조.

배우자, 정치단체, 자선단체에 지출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하다(세법 제2502조(c)). 증여나 유산, 유증, 상속받은 것의 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증여세 부과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세법 제2522조).

자국내 주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납세대상이 되는 증여를 정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다음의 기관에 증여되었거나 다음의 목적을 위한 증여는 모두 공제할 수 있다.

- 국가, 주, 워싱턴 D.C. 또는 그 정치적 하부단위에서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지출하기 위한 증여.
- 예술을 장려하고 아동 및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함.
- 국내·외적 아마추어 스포츠를 장려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법인, 조합, 자선단체, 기금, 재단. 단, 그 법인과 조합 등은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고, 제 501조(c)(3)의 세금면제를 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정당의 특정 후보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운동에 참여 또는 개입해서는 안 됨.
- 지부구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회, 조합, 협회로서 예술을 장려하고 아동 및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 보훈대상자 자녀나 보훈조직 또는 그 보조단체 및 사회. 단, 이들 자녀나 조직, 단체, 사회는 자국 내에서 조직되거나 소유권이 자국 내에 있어야 하며, 모든 소득이 특정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됨.

다) 유산세(Estate Tax)

유산세란 사망시 유산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망시 소유한 모든 자산과 생명보험금, 연금 등을 포함한 유산자산에서 장례비용, 사망시 부채, 혼인공제(marital deduction)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총유산자산에서 제외된다(제2055조).

라) 가산세(Excise Tax)¹⁰⁾

민간재단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1969년 세법개정시 명문화하였으며,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산세라고 불리우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산세는 공익활동에 대한 면허세적 성격과 민간재단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재단이나 매니저에 대한 벌칙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간재단은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의 참가 또는 소득의 누적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면세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세법 제508조(e)). 또한 고유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 자기내부거래 행위, 초과보유지분, 자선 목적을 위협하는 투자, 과세대상 지출에 대해서는 벌과금 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5천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재단은 재단 매니저와 보조금(grants), 장학금 및 유사 혜택 그리고 주요활동, 유기증권과 기타 소유자산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Form 990-PF)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세법 제509조에 의한 민간재단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한 모든 세법 제501조(c)(3)에 기술된 국내 또는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 자선기부금 공제를 최고 금액(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

10) 가산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민간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

관(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

- 연간 후원금 중 1/3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원과 일반대중으로부터 받고 1/3 이하를 투자소득과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으로 받는 조직
- 지원단체(supporting organization)
- 공공안전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ublic safety testing organization)

(1)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1969년 세법개정으로 민간재단의 투자수익에 대해 4%의 가산세를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 이후 2%로 인하되었다(세법 제4940조).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순투자수익이며, 이는 과세연도 동안의 총투자수익과 자본이득 순이익의 합계액에서 허용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총투자수익이란 이자, 배당금, 임대료, 증권 대출금과 관련된 지급액, 저작권 사용료 등에서부터 발생한 총소득을 말하며, 세법 제 511조(자선단체 등의 고유목적무관사업에 대한 과세)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된 공제액이란 일반적으로 총투자수익을 얻는 데 쓰여지거나 혹은 그러한 수익을 얻는 데 사용된 자산의 관리, 보존, 유지를 위해 쓰여진 비용을 말한다. 자본이득 순이익이란 이자, 배당금, 임대료, 저작권사용료, 고유목적사업소득세 계산에 포함된 자산의 매각손익이다. 1969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과세기준금액은 1969년 12월 31일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의 규모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금(set-aside) 설정시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준비금 설정은 IRS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지출되어야 한다.

면세사업재단(Exempt Operating Foundation)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사업재단이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재단을 말한다.

- 사업재단(operating foundation)
- 10년의 과세기간 동안 공적으로 후원을 받은 재단
- 과세연도 동안 항상 그 재단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최소한 75% 이상이 부적격자¹¹⁾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재단
- 과세연도 동안 그 재단이 부적격자인 직원을 갖고 있지 않은 재단

사업재단(operating foundation)이란(제4942조(j)(3)) ① 조정순소득과 ② 최소투자소득 중 적은 금액의 85% 이상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재단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재단을 말한다.

- 자산의 1/2 이상이 관련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단
- 자산의 1/2 이상이 재단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의 주식이면서 자산의 대부분이 관련사업에 사용되는 재단
- 최소투자소득의 2/3 이상이 고유목적에 지출되는(qualifying distributions) 재단
- 후원금(support)의 대부분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고, 기업주식의 초과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5개 이상의 면세조직(exempt organizations)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재단
 - 후원금의 25% 이하는 면세단체로부터 받고, 후원금의 1/2 이

11) 부적격자란 ① 재단에 상당한 기부를 한 자, ② 재단경영자, ③ 법인의 의결권, 조합의 이익분배권(profit interest), 신탁 혹은 비법인조직의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재단에 상당한 기부를 한 자, ④ ①~③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을 말한다.

하는 총투자소득으로부터 받는 재단

지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의 경감세율(세법 제4940조(e))이 적용된다. 지출조건이란, 재단법인이 과세기간 동안에 지출한 적격지출액(qualifying distribution)이 재단의 자산가치에 과거 5년 과세기간의 평균지출비율(average percentage payout)을 곱한 금액과 그 과세연도 동안의 순투자소득의 1%를 합한 금액 이상이고, 지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거 5년의 과세연도 동안 납세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지출비율(percentage payout)이란 과세연도 동안 민간재단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지출액(qualifying distribution)을 과세연도 동안의 민간재단 자산으로 나눈 백분율이고 적격지출이란 재단 또는 1인 이상의 부적격자에 의해 지배되는 단체 또는 사업재단(operating foundation)이 아닌 민간재단에 지불된 금액과 세법 제170조(c)(2)(B)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 세법 제170조(c)(2)(B)에 명시된 목적이란 오로지 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을 위한 것, 국내·국제적인 아마추어 스포츠대회 조성(체육설비나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것을 말한다.

(2)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 아닌 민간재단은 재단의 순투자자산의 5%인 최소투자수익(minimum investment return)을 매년 고유(공익)목적으로 지출 또는 분배하여야 한다(세법 제4942조). 지출하지 않은 소득(undistributed income)이란 지출할 수 있는 금액(distributable amount)에서 적격지출액(qualifying distribution)을 차감한 금액이며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가 처음 부과되고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해 100%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가산세의 첫 번째 과세를 피하려면 민간재단은 비과세정부채권의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장기순자본이득은 제외)를 포함한 최소투자수익을 다음 과세연도 이전에 지출해야 한다.

(3)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출연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대상지출을 명시하고 있다. 명시된 과세대상지출을 하는 민간재단에게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지출이라는 것을 알고 지출에 동의한 재단 매니저에게는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세법 제4945조). 세금 부과 후 과세기간 내에 그 지출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지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이 재단측에 추가로 부과되고 재단 매니저에게는 그 지출액의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매니저에게 부과되는 첫 번째 과세의 한도액은 5천 달러이고 추가 가산세 한도는 1만 달러이다.

과세대상지출이란 민간재단이 로비, 선거, 개인(비차별적인 것은 제외) 및 비공익자선단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전을 하거나 기타 다른 시도를 하는 경우
- 특정 공공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직·간접적으로 선거인 등록운동을 이행하는 경우, 단 정당중립적인 활동은 제외
- 장관이 미리 승인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근거에 따라 수여되는 개인적 보조금(제4945조(g))이 아닌 개인의 여행, 연구,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보조금
- 면세사업재단(exempt operating foundation)이 아닌 재단 등에 제공된 보조금
- 오로지 종교적, 자선적, 과학적, 문학적,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또는 국내·국제적인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를 조성하기 위해 (체육 설비나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어린이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출

(4)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1969년 세법개정에서 민간재단에 의한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재단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민간재단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될 경우 일반영리기업과의 세제상 형평성이 위배되기 때문이다. 보유한도는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주식과 부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 주식을 합하여 20%이고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세법 제4943조). 최초 가산세가 부과된 이후 회계연도 말에도 여전히 기업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가액의 200%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모든 부적격자가 소유한 기업의 주식이 의결권 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의결권 주식의 보유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민간재단과 모든 부적격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이 어떤 기업 의결권 주식의 35%를 넘지 않으며, 부적격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그 기업이 지배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를 35%로 한다. 또한 민간재단이 어떤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2%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종류의 발행주식 시가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969년 5월 26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식은 의결권 주식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일 이후에 상속·증여 등으로 야기되는 초과보유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1969년 5월 26일 현재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재단은 기존 보유주식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주식보유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20%(35%) 규정의 한도 내에서 추가취득이 가능하다. 기존 보유주식의 50%를 축소하는 기간은 주식보

유비중이 95% 이상인 경우 20년, 75~95%인 경우 15년, 75% 이하인 경우 10년이 주어진다.

(5)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민간재단의 소득이나 자산이 부적격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세법 제4941조). 출연자 및 특수 관계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 사용·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는 부적격자와 민간재단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관련 재단 매니저에게는 거래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세법 제4941조). 최초세금(initial tax)이 부과된 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부거래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부적격자에게는 자기내부거래와 관련된 금액의 200%, 재단 매니저에게는 관련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추가가산세를 부과한다. 매니저에게 부과되는 세금 최고한도는 1만 달러이며 추가 가산세도 1만 달러를 한도로 한다.

(6)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면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협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민간재단에 대해 매년 그 투자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세법 제4944조). 가산세가 부과된 후에도 당해 과세기간 안에 투기적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투자액의 25%에 상당하는 추가가산세가 민간재단에 부과된다. 재단매니저가 그 투자에 참여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의 가산세가 재단 매니저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안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단 매니저에게 부과된 최초세금 최고액은 5천 달러이며

추가가산세 최고액은 1만 달러이다.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 목적이 세법 제170조 (c)(2)(B)에 언급된 목적¹²⁾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을 얻거나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 투기적인 투자로 보지 않는다.

2) 기부자에 대한 과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세 공제를 받는다. 세법 제170조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종교·교육·과학연구·자연보호 등의 단체에 현금 혹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IRS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자선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세법 제501조 (c)(3)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모두 자선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가) 법인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이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당해 연도 기부금, 당해 연도의 배당금공제액, 결손금의 소급이월분, 자본손실의 소급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한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나) 개인

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물품에 의한 기부일 경우 공제한도액은 조정 후 소득의 30%이다. 세법에 명시된 단체 이외

12)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위한 것, 국내·국제적인 아무추어 스포츠대회 조성(체육설비나 장치 제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것.

의 기부는 조정 후 총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받으려면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공제(itemizes deduction)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저소득 납세자들은 기본공제를 선택하고 고소득 납세자들은 항목공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주로 고소득 납세자들이 누리게 된다.

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교회, 교회의 모임(convention)이나 협회(association)
- 정상적으로 정규학부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정규등록 학생이 있는 교육기관
-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학교육 및 의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정규적으로 미국정부 또는 주정부 및 그 정치적 지역기관을 통해 받거나 일반인의 직·간접 기부금을 받는 단체
- 정부조직(state, political subdivision, United States, district of columbia)
-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정부단위 또는 일반인의 직·간접적인 기부금으로부터 받는 단체
- 민간재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에 의한 자선기부금은 모두 연방증여세(Federal Gift Tax) 공제에도 해당되며 사망시에 이루어지는 자선증여(charitable gifts)의 경우에도 연방유증세(Federal Estate Tax)에 대한 공제가 주어진다. 연방유증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60만 달러이므로 연방유증세 공제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테스트

세법 제501조(c)(3)에서 면세 자격이 있는 기관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공공안전 시험의 목적, 또는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장려(경기장 시설이나 장비의 제공은 제외), 또는 아동 및 동물 학대 방지의 목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법인, 금고, 기금, 재단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기관의 소득이 주주나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으로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기관의 실질적 활동이 정치적 선전활동 또는 입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의 후보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운동에 참여·개입(출판 또는 연설문의 배포 포함)해서는 안 된다.

세법 제501조(c)(3)에서의 기관은 세법 제170조(소득세), 제2055조 및 제2106조(유산세), 제2522조(증여세)에서 세금공제가 가능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공익적(charitable)’인 것으로 언급된다. 이를 테면, 세법 제170조는 “공익적 기부와 증여”에 관한 조항인데 여기에서 ‘공익적’이란 것은 세법 제501조(c)(3)에서 열거된 8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각각의 테스트에서 고려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 테스트

공익적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 ① 그 목적을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그 기관의 주요 활동으로서 면세 불가능한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② 기관의 수입을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③ 기관의 청산시 그 자산을 면세 목적이나 면세기관에 분배하도록 하며,

④ 여타의 입법로비, 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1) 정관

소득세 규정은 공익적 기관에 대하여 2가지 유형의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을 고려하는데, 기관이 설립된 근거가 되는 정관(article) — 법인의 설립인가, 협회의 정관, 신탁의 계약합의서, 기타 설립시의 공적 규정 — 과 기관을 운영할 때 준수하는 규정을 기술한 내규(bylaws)가 그것이다. 법인 형태의 기관에 있어서 정관이란 ‘법인의 정관’을 말하며, 법인의 형태가 아닌 신탁이나 협회 등은 정관이 ‘constitution’, ‘agreement of trust’, ‘declaration of trust’와 같이 달리 불려질 수 있다. 법인 형태의 기관일 경우 내규만으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관리규정이 부족하고, 신탁이나 협회 형태의 기관인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안에 보통 2가지 관리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기관의 형태는 법인, 신탁, 협회, 금고, 기금, 재단 중 하나이어야 하며 개인, 동업, 일정한 형태가 없는 개인단체는 자격이 없다.

연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 자격을 획득하려는 기관은 정관에 기관의 목적을 하나 이상의 면세 목적으로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관에 주요활동으로서 면세 목적이 아닌 활동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민간재단의 관리규정에는 그 밖의 추가적인 필요사항이 요구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심사과정에서 설립인가를 포함한 정관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에 면세 자격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함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결함을 수정하더라도 면세 자격은 그 기관의 설립인가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정이 된 실제 날짜로부터 주어진다.

(2) 주정부에의 등록

국세청은 기관의 설립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만족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자격의 타당성을 따로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설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연방정부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 또한 주정부의 비영리법인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기관이 모두 면세 자격이 있지는 않다.

설립인가는 IRS에 제출되기 전에 주의 해당 관할기관에서 승인되거나 등록되어야 하는데,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유사한 기관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명칭의 중복여부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영리법인과 달리 면세기관은 ‘corporation’, ‘company’, ‘incorporated’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3) 목적 조항

공익적 면세기관의 정관은 기관의 목적을 세법 제501조(c)(3)의 8가지 구체적인 공익적 목적인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검사, 문학, 교육,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장려, 아동 및 동물 학대의 방지로 제한하고 그 목적들을 위해서만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직접 면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를 받아 세법 제501조(c)(3)의 면세기관들에게 지급하고 세법 제501조(a)에 의한 과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설립되어진 기관도 면세기관으로서의 목적조항에 부합한다. 또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함과 동시에 주요 활동으로서 면세 불가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위에 열거된 목적들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 예를 들어 ‘eleemosynary(자선적인)’, ‘civic welfare(시민 복지)’란 용어는 비록 공익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면세 불가한 목적과 면세 목적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면세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단어 사용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 사용 가능 : “○○○기관은 기부를 받아 세법 제501조(c)(3)에 기술된 기관에 지급하고 제501조(a)의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설립된다”, “Gotham City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하여”
- 사용 불가 : 운영이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조건 없이 “○○회사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서술 없이 “○○○는 성인교육교실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그 기관의 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내규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그 목적을 위한 활동은 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정관 변경까지 유발하지 않도록 수년간 지속되는 것이 좋다.

(4) 이익분배(Inurement)의 조항

정관의 이익분배 조항은 기관의 수입이 이사, 관리자, 수탁자, 또는 기타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다음의 5가지 거래(세법 제503조)를 참조하는 것이 이익분배 조항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소득이나 원금 일부의 적절한 보증과 이자가 없는 대부
- ② 합당한 급여나 실제 개인의 서비스에 상응한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의 지급
- ③ 특혜를 주는 서비스의 제공
- ④ 적정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보다 적게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적정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이나 자산의 일부를 구입

- ⑤ 소득이나 원금을 면세기관의 창립자, 기부자, 가족구성원,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법인에 유용되도록 하는 거래에 참여

한편, 기관이 이익분배 조항에 부응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기관이 공익적 범주 안에서 활동하는지도 보아야 한다. 즉, 그 기관의 면세 활동 산출물의 수혜자 집단이 불특정다수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광범위한가를 봐야 하지만 그 해답이 항상 논리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성인건강클럽은 면세될 수 없는데 마을의 청소년체육기관이 면세될 자격이 있는 경우라든가 종친회는 면세될 수 없는데 이태리인이나 아시아인 같은 특정 민족의 발전을 위한 단체가 자선적으로 취급되는 경우 등이다.

(5) 청산 조항

공익적 기관으로서 면세 자격을 얻고자 하는 기관의 정관에는 그 기관이 청산될 때 자산을 반드시 세법 제501조(c)(3)의 면세 목적에 분배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지방정부에 분배하거나, 다른 면세기관에 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즉, 청산될 때의 자산이 기증자, 이사 또는 주주, 기관의 구성원, 세법 제501조(c)(3)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나 목적에 되돌려져서는 안 된다.

일부 주의 법률은 청산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언급이 필요 없다.

(6) 정치적 활동 조항

면세 자격을 얻기 위한 기관은 정관이나 내규에 ① “면세기관의 실질적 활동이 선전활동이거나 입법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 ② “면세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참여 또는 개입(출판 또는 연설문 배포, 연설 포

함)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 ③ “입법·선거운동기관(Action Organization)으로서의 활동에 목적을 두거나 종사함을 금지한다”는 언급을 됴으로써 정치적 운동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기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제한적 규모의 로비가 허용될 수 있는데(민간재단 제외), 이 경우 정관에서 입법활동 지출과 관련된 비용 테스트(expenditure test)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로비나 대중운동에 지출한 비용이 테스트에서 정한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면세기관으로서의 정치적 활동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7)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

세법 제508조(e)에 의해 민간재단(일반적으로 설립자 가족 또는 특정 개인인 제한적 수의 사람들로부터 재원을 받는 면세기관)으로 분류되는 공익기관은 정관에 가산세(Excise Tax)의 부과를 유발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민간재단의 경우 공익기관이더라도 민간재단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관리규정에 청산시 잔여 재산을 면제 목적이나 면세기관에 배분해야 한다는 청산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면세기관으로서 분류될 수 없다.

나) 운영 테스트

운영에 관한 테스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금지, 정치적 활동의 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기관이 운영에 관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테스트에 대한 증거자료로 기관 활동의 성격, 지출의 성격, 재원, 조직 운영의 후원자를 고려한다.

(1) 공익의 범주(charitable class)

세법 제501조(c)(3)의 공익적 기관으로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제한적인 개인집단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의 범주)을 위하여 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즉, 기관이 특정 개인, 설립자의 가족, 주주, 또는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가난한 은퇴자들과 그 처를 위하여 설립된 신탁은 면세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로 특정 사람들을 위한 의료 수술비 지원이나 화재로 불탄 집을 복원해 주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기금도 공익적 범주로 볼 수 없다. 마을 지역에서 무주택자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사업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은 무주택자들이나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역시 공익적 범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특정 개인들이 아니라면, 소규모의 개인집단이라도 면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번영을 위하여 그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재단은 면세재단으로 규정되는 반면, 특정 대학 및 학과 내에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신탁은 특정 개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면세기관으로 볼 수 없다.

공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모두를 위하는 것도 면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의 일정 부분을 그 설립자와 공익적인 부문 모두에 지급하는 부분적 수익신탁(split interest trust)은 면세될 수 없다. 또한 설립자의 묘지를 관리하는 동시에 공익적 부문에 똑같이 매년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신탁도 면세될 수 없다.

(2) 사업활동

실질적 활동으로 사업이나 거래를 하는 기관이라도 연방세법에서의 공익적인 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기관의 사업이나 거래

의 주요 목적이 면세 목적 이외의 사업(고유목적무관사업 : unrelated business)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면세될 수 없고 그 주요 목적이 면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이란 말의 의미는 기관 운영의 사실과 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즉,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당해 기관이 면세 자격이 있는 공익적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관의 고유목적무관사업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의 면세 목적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 그 활동 자체의 성격보다는 그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의 면세 목적과의 관련성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면, 한 재활용품 상점이 장애인로자를 고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그 상점이 영리추구를 바탕으로 하여 타 재활용품 상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면세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Goodwill 회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로자들이 가구와 재활용품을 수선하는데, 그 주요 동기가 상점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 근로자의 훈련과 생계도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주요 목적이 면세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3) 공익적 지출

‘지출상응 테스트(Commensurate Test)’를 제외하면 세법상 공공자선기관에 연간 지출금액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그러나, 기부자와 후원자들은 그들의 기부금이 가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기금이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감시하고자 한다. 일부 주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지출을 통제하는 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특히 프로그램 비용과 관련된 행정비용과 자금조달비용의 수준을 감시한다.

민간재단의 경우는 일반 기부자들에 의하여 면밀히 감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배(minimum distribution)’라는 조건이 적용

된다. 최소한의 분배에 의하면 적어도 투자자산에서 연평균가치의 5%를 매년 공익적 보조금(grants), 프로그램의 수행, 또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자산의 구입에 지출하여야 한다.

지출 면에서 기관의 면세 자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적용하는 기준인 '지출상용 테스트'는 면세기관의 지출이 면세기관의 재정 자원의 규모에 상응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64년에 면세기관이 고유목적 무관사업 활동에 면세기관의 자산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데 처음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0년 초에 세입관련 정부부서는 공익적 지출과 관련한 특별 중점 사항들을 검토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공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출상용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는 기관이 공익을 위해 배정하기로 한 자금의 비중을 초과하여 지출했는지를 측정하였다. 주정부의 공익기관에 대한 규정은 그러한 지출과 관련된 것이며 특정 한도를 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출상용 테스트는 메일로 기금을 모으는 가짜 자선기관인 UCC(United Cancer Council) 회사의 면세자격을 박탈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UCC회사는 1986년에 증가된 7백만 달러 중 공익적 활동에 해당하는 임상서비스와 연구에 겨우 30만 달러 미만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회사의 기금모집위원회인 Watson & Huhgey에 지급하여, 지출상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또, 공익을 위해 사용할 이윤은 거의 남기지 않고 운영비용과 급여를 과다 지출한 빙고게임 운영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IRS는 Temple City 고교의 경우 빙고 운영수입 중 공익목적의 지출로써 고교에 배정하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침으로 총수입의 15%를 적용한 바 있다.

(4) 소득 축적

면세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그 기관의 수입이 실제로 공익사업에 지출되는 비중이다. 따라서 기관의 면세 자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면세기관이 그 소득을 공익적 목적에 지출하기보다 저축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공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일부 이윤 또는 지출하고 남은 수입이 축적될 수 있다.

- 현재 이후의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운전자본 유지를 위한 경우 : 보조금 손실, 기부의 저조, 투자소득 감소,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운전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때 영리법인의 소득축적에 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 해의 운영예산 최소금액이 운전자본기금을 위한 적정 최소금액이 될 수 있다.
-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노후장비의 교체, 신축건물의 취득, 다른 자본자산의 획득을 위한 경우
- 현재 유용 가능한 자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경우

(5) 후원 유인능력

전형적인 세법 제501조(c)(3)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자발적인 기부와, 기부로부터의 투자소득(기본재산이나 운전자본금으로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관의 공익적 성격은 기관의 활동을 후원하는 기부를 유인하는 능력에 의하여 증명된다.

국세청은 기관의 후원 유인능력을 결정하고 조사하는데 후원비율 테스트(support ratio tests)를 행한다. 민간재단의 경우 어떤 한 정된 기부자들로부터 후원이 이루어지면서, 기부의 금액이 제한되

어 있거나 기부가 없는 기관은 공익적 성격이 없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지원 수준은 일반적으로 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United Fund는 기부로 그 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반면, 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통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한다.

(6) 입법·선거운동기관(Action Organization)

입법·선거운동기관(Action Organization)이란 ① 기관의 목적이 지방, 주, 연방법의 개정 등 그 실질적 활동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 ② 어떤 후보나 정당에 지지 또는 반대를 하는 정치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또는 개입(출판, 인쇄된 발언문의 배포, 연설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 세법 제501조(c)(3)에 의한 공익적 기관으로서의 면세 자격은 얻을 수 없다. 기관의 활동이 입법¹³⁾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입법에 대한 제안, 지지, 반대를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입법기관의 구성원들과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계약이나 주장
- 입법의 채택이나 거부를 주장

13) “입법(legislation)”이란 용어는 미국 의회, 주 의회, 지방 의회 등, 일반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국민발안·헌법개정 등에 의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2. 일본

가.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을 크게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비영리법인에는 협동조합과 인격 없는 사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비영리로 구분하는 법인들을 일본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것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란 적극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기준」).

- 동창회, 동호회 등
- 특정단체의 구성원 또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상호구제 등
- 후원회 등 특정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민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한 종류로서 기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하여 광의의 공익법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광의의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종교법인(종교법인법)
- 의료법인(의료법)
- 갱생보호법인(갱생보호사업법)
- 특정비영리활동법인(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민법상 공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외의 설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도 영리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일반적으로 중간법인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신용금고법에 의한 신용금고, 각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각종 공제조합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III-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III-15> 비영리법인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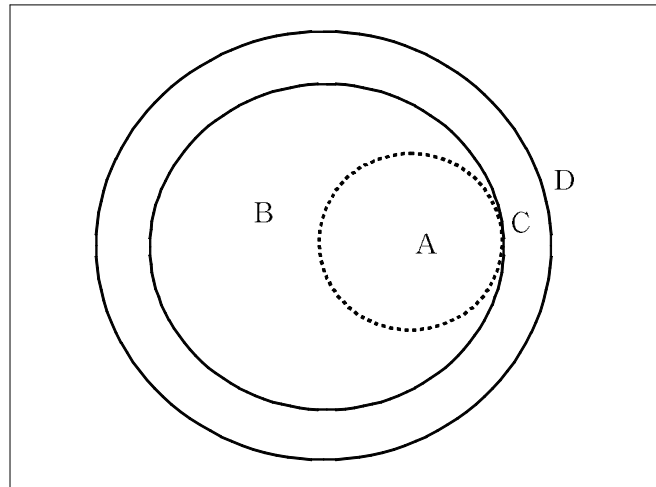
| | 공익법인 | 중간법인 |
|-----|---|------------------------------|
| 목 적 | 공 익 | 비 공 익 |
| 대 상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갱생보호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 노동조합 신용금고 협동조합 공제조합 |

주 : 중간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단체임.

자료 : 總理府 編 『平成11年版 公益法人白書』, 大藏省印刷局, 1999.

[그림 III-2]는 비영리법인의 분류에 따라 세제상 지원이 차등화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III-2] 일본의 비영리법인 분류



주 : A :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 인정대상 법인
B :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C : 공익법인
D : 일반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법인 현황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현재 공익법인의 수는 26,380개이며 이 중 재단법인이 13,553개, 사단법인이 12,827개이다.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은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해당 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해당 관청은 국가 및 도도부현으로 분류된다. 하나의 공익법인이 복수의 고유목적사업이 있는 경우 복수의 관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므로 국가소관 공익법인 6,869개와 도도부현 소관 공익법인 19,606개를 단순합계하면 26,475개로 실질적인 공익법인

수와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1993년 이후 공익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1998년 공익법인의 수를 1993년과 비교하면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중 국가소관 공익법인은 1.0% 증가한 반면 도도부현 소관 공익법인은 5.9% 증가하였다. 또한 사단법인의 경우 1993년 12,142개에서 1998년 12,827개로 5.6% 증가하였고, 재단법인은 1993년 13,072개에서 1998년 13,553개로 3.6%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3~1998년 기간의 공익법인 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간 공익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관할하는 공익법인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공익법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사단법인의 증가율이 재단법인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은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① 생활일반, ② 교육·학술, ③ 정치·행정, ④ 산업의 4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인 수를 보여준다. 목적별 법인 수의 단순합계가 법인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주요 설립목적을 2가지 이내로 기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각각의 비중은 생활일반이 14,285개 법인, 52.6%로 가장 높고 교육·학술이 10,783개 법인, 39.7%, 산업이 7,609개 법인으로 28%, 정치·행정이 3,180개 법인, 11.7% 순이다.

<표 III-16> 연도별 공익법인 수의 추이

(단위 : 개)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국가소관 | 사단 | 3,557 | 3,583 | 3,627 | 3,654 | 3,672 | 3,691 |
| | 재단 | 3,242 | 3,284 | 3,295 | 3,161 | 3,171 | 3,178 |
| | 합계 | 6,799 | 6,867 | 6,922 | 6,815 | 6,843 | 6,869 |
| 도도부현 소관 | 사단 | 8,643 | 8,771 | 8,882 | 9,023 | 9,130 | 9,196 |
| | 재단 | 9,864 | 10,059 | 10,215 | 10,343 | 10,396 | 10,410 |
| | 합계 | 18,507 | 18,830 | 19,097 | 19,366 | 19,526 | 19,606 |
| 전 체 | 사단 | 12,142 | 12,296 | 12,451 | 12,618 | 12,743 | 12,827 |
| | 재단 | 13,072 | 13,309 | 13,476 | 13,471 | 13,532 | 13,553 |
| | 합계 | 25,214 | 25,605 | 25,927 | 26,089 | 26,275 | 26,380 |

주 : 1) 국가 및 도도부현과의 공관법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소관과 도도부현 소관 법인을 합한 공익법인 수는 전체 공익법인 수와 일치하지 않음.

2) 각 연도 10월 1일 현재 법인 수임.

자료 : 總理府 編, 『平成11年版 公益法人白書』, 大藏省印刷局, 1999.

<표 III-18>은 자산규모별 재단의 분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산액 총계는 125조 693억 엔에 달하고 법인 당 평균 47억 4,107만 엔으로 전년도(법인 당 45억 6,575만 엔)에 비해 1억 8천만 엔 정도 증가하였다. 자산액 총계 중 1/2 이상인 68조 2,694억 엔을 하나의 법인(재단법인 공고주택용자보증협회)이 차지하고 있어 평균 자산액을 높이고 있다. 자산액 규모 상위에 있는 법인은 채무보증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이 많다. 자산 규모가 큰 법인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자산 규모가 작다. 1천만 엔 미만의 법인이 14.7%, 1천만 엔 이상 5천만 엔 미만이 23.0%로 약 40% 정도의 법인이 이 구간에 속한다. 자산액 중 금융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은 29조 7,046억 엔으로 총자산 규모의 24%에

이른다.

<표 III-17> 설립목적별 법인 수(1998년)

(단위 : 개, %)

| | 계 | | 국가소관 | | 도도부현소관 | |
|-------|--------|------|-------|-------|--------|--------|
| | 법인 수 | 비중 | 사단 | 재단 | 사단 | 재단 |
| 생활일반 | 14,285 | 52.6 | 1,163 | 1,163 | 6,111 | 5,848 |
| 교육·학술 | 10,783 | 39.7 | 1,186 | 2,615 | 1,827 | 5,155 |
| 정치·행정 | 3,180 | 11.7 | 958 | 444 | 685 | 1,093 |
| 산업 | 7,609 | 28.0 | 1,909 | 908 | 3,104 | 1,688 |
| 계 | 35,857 | | 5,216 | 5,130 | 11,727 | 13,784 |
| 법인 수 | 27,137 | | 3,897 | 3,486 | 9,204 | 10,550 |

주 : 비중은 법인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總理府 編, 『平成11年版 公益法人白書』, 大藏省印刷局, 1999.

<표 III-18> 일본 재단의 자산규모별 분포

(단위 : 개, %)

| | 중앙정부관할 | | 지방정부 | | 계 | |
|-----------------|------------|------------|-----------|------------|-------------|------|
| | 사단 | 재단 | 사단 | 재단 | 법인 수 | 비중 |
| 1천만엔 미만 | 441 | 117 | 2,614 | 728 | 3,896 | 14.7 |
| 1천만엔 이상 5천만엔 미만 | 1,051 | 216 | 2,907 | 1,902 | 6,060 | 23.0 |
| 5천만엔 이상 1억엔 미만 | 573 | 182 | 1,094 | 1,510 | 3,342 | 12.7 |
|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 | 991 | 937 | 1,612 | 3,472 | 6,981 | 26.5 |
| 5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 236 | 507 | 387 | 1,052 | 2,178 | 8.3 |
| 10억엔 이상 | 399 | 1,219 | 582 | 1,746 | 3,923 | 14.8 |
| 법인 수 | 3,691 | 3,178 | 9,196 | 10,410 | 26,380 | 100 |
| 자산 합계액(백만엔) | 13,727,694 | 87,331,837 | 8,851,579 | 15,316,538 | 125,069,322 | |
| 자산 평균액(백만엔) | 3,719 | 26,480 | 963 | 1,471 | 4,741 | |

자료 : 總理府 編, 『平成11年版 公益法人白書』, 大藏省印刷局, 1999.

<표 III-19>에 의하면 1998년도에 영리·비영리를 포함한 총법인 수에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1993년도 3.23%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표 III-19> 유형별 법인 수

(단위 : 개,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총법인 | 2,648,985 | 2,696,342 | 2,738,594 | 2,784,031 | 2,757,586 | 2,790,749 |
| 영리법인 ¹⁾ | 2,563,301 | 2,610,124 | 2,651,797 | 2,696,549 | 2,669,566 | 2,702,410 |
| 비영리법인 ²⁾ | 85,684 | 86,217 | 86,797 | 87,482 | 88,020 | 88,339 |
| 일반비영리 | 63,317 | 63,305 | 63,327 | 63,407 | 63,331 | 62,965 |
| 인격 없는 사단 | 5,477 | 5,680 | 5,875 | 6,283 | 6,610 | 6,913 |
| 협동조합 | 57,840 | 57,625 | 57,452 | 57,124 | 56,721 | 56,052 |
| 공익법인 | 22,367 | 22,912 | 23,470 | 24,075 | 24,689 | 25,374 |
| 영리법인/총법인 | 96.8 | 96.8 | 96.8 | 96.9 | 96.8 | 96.8 |
| 공익법인/총법인 | 0.84 | 0.85 | 0.86 | 0.86 | 0.90 | 0.91 |
| 비영리법인/총법인 | 3.23 | 3.20 | 3.17 | 3.14 | 3.19 | 3.17 |
| 공익법인/비영리법인 | 26.10 | 26.57 | 27.04 | 27.52 | 28.05 | 28.72 |

주 : 1) 보통법인, 외국법인

2) 인격 없는 사단, 협동조합, 공익법인

자료 : 大藏財務協會, 『國稅廳 統計年報書』, 1993~1996.

<http://www.nta.go.jp/category/toukei/stati/12/05.htm>

<http://www.nta.go.jp/category/toukei/stati/h10/houjin/05.htm>

<표 III-20>은 법인형태별 법인세수와 그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세수비중은 1998년 기준으로 0.56%에 해당하고 있다. 인격 없는 사단 및 협동조합을 포함한 일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수비중은 3.42%에 이르고 있다. 총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997년보다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I-20> 유형별 과세 현황

(단위 : 백만엔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총법인 | 12,881,539 | 11,557,569 | 11,649,287 | 13,890,685 | 13,462,171 | 11,988,431 |
| 영리법인 ¹⁾ | 12,406,885 | 11,142,591 | 11,192,403 | 13,309,189 | 13,045,672 | 11,511,081 |
| 비영리법인 ²⁾ | 474,654 | 414,979 | 456,884 | 581,496 | 416,499 | 477,350 |
| 일반비영리 | 415,116 | 353,546 | 396,421 | 518,251 | 347,406 | 410,619 |
| 인격 없는 사단 | 2,374 | 2,671 | 2,463 | 2,604 | 2,785 | 2,738 |
| 협동조합 | 412,742 | 350,875 | 393,958 | 515,647 | 344,621 | 407,881 |
| 공익법인 | 59,538 | 61,433 | 60,463 | 63,245 | 69,093 | 66,731 |
| 영리법인/총법인 | 96.3 | 96.4 | 96.1 | 99.4 | 96.9 | 96.0 |
| 공익법인/총법인 | 0.46 | 0.53 | 0.52 | 0.46 | 0.51 | 0.56 |
| 비영리법인/총법인 | 3.68 | 3.59 | 3.92 | 4.19 | 3.09 | 3.98 |
| 공익법인/비영리법인 | 12.54 | 14.80 | 13.23 | 10.88 | 16.59 | 13.98 |

주 : 1) 보통법인, 외국법인

2) 인격 없는 사단, 협동조합, 공익법인

자료 : 大藏財務協會, 『國稅廳 統計年報書』, 1993~1996.

<http://www.nta.go.jp/category/toukei/stati/12/05.htm><http://www.nta.go.jp/category/toukei/stati/h10/houjin/05.htm>

공익법인 중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각출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 법인의 수입구성을 보면 <표 III-21>과 같다. 1998년 공익법인의 연간수입 규모는 14조 5,264억 엔으로 당해 연도 GDP 규모인 498조 4,990억 엔의 2.9% 수준이다.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2%로 가장 크고 기부·보조금수입도 10.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회비와 재산운용수입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표 III-21> 재단법인의 연간수입 구성

(단위 : 백만엔, %)

| | | 회비 | 재산운용 수입 | 기부· 보조금 | 사업수입 | 기타수입 | 계 |
|-------------|----|---------|------------|------------|-----------|-----------|------------|
| 국가소관 | 금액 | 243,008 | 247,313 | 742,664 | 5,159,062 | 1,511,599 | 7,903,646 |
| | 비중 | 3.1 | 3.1 | 9.4 | 65.3 | 19.1 | |
| 도도부현 소 관 | 금액 | 141,993 | 179,739 | 774,042 | 4,020,647 | 1,506,369 | 6,622,790 |
| | 비중 | 2.1 | 2.7 | 11.7 | 60.7 | 22.8 | |
| 계 | 금액 | 385,001 | 427,052 | 1,516,706 | 9,179,709 | 3,017,968 | 14,526,436 |
| | 비중 | 2.7 | 2.9 | 10.4 | 63.2 | 20.8 | |

자료 : 總理府 編, 『平成11年版 公益法人白書』, 大藏省, 1999.

재단법인의 지출내역을 보면 <표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 항목이 73.6%로 가장 높다. 사업비란 공익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지출로 관리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지도감독상의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행하는 수익사업(지도감독상의 수익사업)에 지출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표 III-22> 재단법인의 연간지출 구성

(단위 : 백만엔, %)

| | | 사업비 | 관리비 | 고정자산취득비 | 기타지출 | 계 |
|-------------|----|------------|-----------|---------|-----------|------------|
| 국가소관 | 금액 | 5,872,018 | 598,517 | 165,512 | 1,189,695 | 7,825,741 |
| | 비중 | 75.0 | 7.6 | 2.1 | 15.3 | |
| 도도부현 소 관 | 금액 | 4,727,350 | 735,759 | 226,814 | 879,560 | 6,569,483 |
| | 비중 | 72.0 | 11.2 | 3.5 | 13.3 | |
| 계 | 금액 | 10,599,368 | 1,334,276 | 392,326 | 2,069,255 | 14,395,224 |
| | 비중 | 73.6 | 9.3 | 2.7 | 14.4 | |

자료 : 總理府 編, 『平成11年版 公益法人白書』, 大藏省, 1999.

다.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

공익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원칙은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법인세법 제4조 제1항)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 예를 들면 기부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구성은 민법 제34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법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공익법인이란 신앙·종교·자선·과학·기예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법인화된 비영리 협회 혹은 재단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범위는 <표 III-23>과 같다.

<표 III-23> 일본의 공익법인 범위

공익법인(법인세법 별표II)

1. 상호부조협회 및 연맹
2. 학교법인
3. 여러 유형의 무역협회
4. 의료보험협회
5. 사회복지법인
6. 종교법인
7. 상공회의소 및 산업협회
8. 세무사협회 및 변호사협회
9. 법인화된 노동조합
10. 일본 적십자사회
11. 수출입업자협회
12. 일본 경륜협회
13. 민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및 협회

수익사업이란 판매업, 제조업 등으로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2조 13호)를 말하며, 그 범위는 <표 III-24>와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1항).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 및 지출, 자산과 부채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자산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구분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하지 않으나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상각비 등의 비용만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달 15-2-1). 공통경비는 자산의 사용비율, 종업원의 종사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표 III-24> 일본의 수익사업 범위

| 수 익 사 업 | | |
|---|----------------|--|
| 1. 물품판매법 | 14. 식대업 | 30. 양재, 재봉, 작물작부, 편물수예, 요리, 이용, 미용, 다도, 꽃꽂이, 연극, 연예, 무용무담, 음악, 회화, 서도, 사진, 공예, 디자인(문학포함), 자동차조종 또는 일정한 선박조종(기예)의 교수를 하는 사업 또는 입시, 보습을 위한 학력의 교수 혹은 공개모의학력시험을 하는 사업 |
| 2. 부동산판매업 | 15. 여관업 | |
| 3. 금전대부업 | 16. 요리점업기타음식점업 | |
| 4. 물품대부업 | 17. 주선업 | |
| 5. 부동산대부업 | 18. 대리업 | |
| 6. 제조업 (전기, 가스 또는 열의 공급업 및 물품의 가공 수리업을 포함) | 19. 중개업 | |
| 7. 통신업 | 20. 도매상업 | |
| 8. 운송업 | 21. 광업 | |
| 9. 창고업 | 22. 토석채취업 | |
| 10. 청부업 | 23. 목욕탕업 | |
| 11. 인쇄업 | 24. 이용업 | |
| 12. 출판업 | 25. 미용업 | |
| 13. 사진업 | 26. 흥행업 | |
| | 27. 유치장업 | 32. 신용보증업 |
| | 28. 유람소업 | 33. 공업소유권 등을 양도 및 제공하는 사업 |
| | 29. 의료보건업 | |

주 : 1. 상기의 수익사업 중 그 업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지는 공공·공익적인 것 등 특정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다음의 사업은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 신체장애자 및 생활보호자 등이 종업원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그 사업이 이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 ② 모자복지단체가 하는 사업으로서 모자복지자금 등의 대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 및 공공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료 : 中央監査法人, 『公益法人の運営實務 Q & A』, 1999.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일반적인 의미의 기부금에 추가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중에서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제37조 4항). 이러한 간주 기부금은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인 ①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③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④ 일반기부금의 4가지 형태 중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이 일반법인에 비해 높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의 50%와 연간 200만 엔 중 큰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액이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이 손금산입 한도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3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의 법인소득세율인 30%보다 낮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법인세율의 최근 개정 내용이 <표 III-25>에 요약되어 있다.

<표 III-25>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 | 1998년 이전 | 1998년 4월 이후 | 1999년 4월 이후 |
|--------------------|----------|-------------|-------------|
| 보통법인 | 37.5 | 34.5 | 30 |
| 중소법인 ¹⁾ | 28 | 25 | 22 |
| 공익법인, 협동조합, 특정의료법인 | 27 | 25 | 22 |

주: 1) 중소기업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이고, 연간소득 800만엔 이하인 법인을 말함.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적용하는 세율이 낮고 또 사업분량배당 등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조합원에 대한 사업분량배당 등은 본래 잉여금의 분배이지 손금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매입 등의 협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종의 에누리나 리베이트로 취급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일반의료법인의 경우 세제상 영리법인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공립병원이나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헌을 하여 재무성이 특별의료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같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확정신고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 사업연도 수지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의 6). 그러나 법인형태인 정당 또는 정치단체 등 법인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 등으로 보지 않는 법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8,000만 엔 이하인 법인은 수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나) 소득세

공익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이자·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조).

다) 상속세

종교, 자선, 과학, 교육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을 받고 그 재산이 대중을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라) 자본이득세

공익법인에 기부된 재산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교육, 과학, 문화 또는 사회복지 등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자본이득세가 비과세된다.

마) 등록세 및 면허세

등록 및 면허세는 중앙정부나 공공법인에 한해서 비과세되며 공익법인의 경우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등록하면 비과세 처리된다. 한정된 목적에 해당되는 재산으로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교 건물과 토지, 종교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종교법인의 건물 또는 토지 등이 있다.

바) 지가세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정해진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대부분의 경우 공익법인에게는 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998년 이후의

과세기간부터 당분간 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71조).

사) 소비세

소비세는 기업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금이 부과되는 거래로는 자산의 차용 또는 거래, 기업서비스의 제공 및 수입거래 등이 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의 매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소비자에게 최종 세부담을 주는 세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을 차용하거나 거래하였을 때에는 소비세를 면세시켜 주며 공익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을 차용하거나 매매하는 일정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면세시켜 준다. 교육, 의료와 복지 서비스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비과세거래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경우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지정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며, 과세거래 이외의 비과세거래와 면세거래는 다음과 같다.

- 비과세수입항목 : 수취이자수입, 기본재산이자수입
- 비과세지출항목 : 급료수당, 법정복리비, 제회비, 임차료(토지), 보험료, 조세공과금
- 면세수입항목 : 회비수입, 입회금수입, 국가·지방공공단체보조금수입, 기부금수입

아) 지방세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주요 지방세로는 지방 및 시당국 주민세, 지방사업세, 지방 부동산취득세와 시당국 고정자산세가 있다.

(1) 주민세

주민세는 도도부현민세 또는 시정촌민세로서 균등할, 법인세할 및

이자할(도도부현민세만 이자할임)이 있다. 균등할은 비과세되는 공익 법인에 한해 사무소 등의 소재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과세한다.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이란 박물관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 34조의 법인, 민법 제34조의 법인 중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이 수익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행하는 사무소·사업소가 소재 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서 균등할이 과세된다(지방세법 제24조 4항). 법인세할은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사무소·사업소 소재지인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서 과세된다. 이자 할은 공익법인이 수취한 이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제25조의 2조 2항).

(2) 사업세

지방사업세란 법인의 사업에 대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하는 도도부현세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수익사업의 범위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3)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시(재건축 포함)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는 도도부현민세이다. 부동산의 가격이란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을 말한다. 공익법인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73조의 4).

- 유아원이 직접 보육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 간호부 등 특정 의료관계자가 양성소에서 직접 교육에 사용하는 부동산
-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접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부동산
- 도서관, 박물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해 직접 연구에

사용하는 부동산

(4)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고정자산(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소유자에게 고정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과세표준에 대해 1.4%(제한세율 2.1%)의 세율로 과세되는 시정촌민세이다.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348조 2항).

- 유아원이 직접 보육 목적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 간호부 등 특정의료관계자가 양성소에서 직접 교육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 도서관, 박물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해 직접 연구에 사용하는 부동산
- 학생 또는 생도의 수학을 지원할 목적으로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기숙사로 각령에 정해진 것에 직접 사용하는 가옥

도시계획세는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가옥에 대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시정촌세이며 공익법인에 관한 비과세특례는 고정자산세와 동일하다.

(5) 특별토지보유세

특별토지보유세는 1972년 이후에 취득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의 보유 및 취득에 과세하는 시정촌세이며 공익법인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동항이 규정하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부동산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고정자산세가 비과세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2) 기부자에 대한 과세

가)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선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이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①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것이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0.25%와 소득의 2.5%의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란 공공법인, 공익법인 중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정령(내각령)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부금이다¹⁴⁾. 일반기부금은 자본금의 0.125%와 소득의 1.25%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나) 개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대상이 된다. 공제액은 지출한 특정기부금액 중 총소득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

14)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된 특정공익신탁에 신탁재산을 위해 지출한 금전에 대해서도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3. 한·미·일 비교

가. 비영리법인 관련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전체 법인 수 중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III-26>, 법인세수에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III-27>과 같다. 우리나라는 영리·비영리를 합한 전체 법인 수가 181,835개이고, 이 중 12,817개인 7.0%가 비영리법인이다. 일본은 전체 2,790,749개 중 3.2%인 88,339개가 비영리법인이다. 미국의 경우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수는 0.9%인 40,621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가 7.0%인데 비해 세수 비중은 25.8%로 상당히 높다. 일본은 비영리법인의 수와 세수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은 법인 수의 비중이 0.9%이고 세수 비중은 0.2%이므로 법인 수에 비해 세수 비중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로 집계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부문으로 분류되는 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수 비중을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크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계 중에서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법인만을 포함하는 범위로 비영리법인의 세수 비중을 외국과 비교하면 25.8%가 아닌 1.2%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지 않다.

<표 III-26> 주요국의 법인 수 비교

(단위 : 개, %)

| | 한 국(1998) | | 일 본(1998) | | 미 국(1996) | |
|-------|-----------|-------|-----------|-------|-----------|-------|
| | 법인 수 | 비중 | 법인 수 | 비중 | 법인 수 | 비중 |
| 영리법인 | 169,018 | 93.0 | 2,702,410 | 96.8 | 4,631,370 | 99.1 |
| 비영리법인 | 12,817 | 7.0 | 88,339 | 3.2 | 40,621 | 0.9 |
| 계 | 181,835 | 100.0 | 2,790,749 | 100.0 | 4,671,991 | 100.0 |

주 : 세무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9.

<http://www.nta.go.jp/category/toukei/stati/h10/houjin/05.htm>http://www.irs.gov/tax_stats/soi/soi_bul.html/96EOUNRL.EXE,96CORART.EXE

<표 III-27> 주요국의 법인세액 비교(1998년)

(단위 : 억원, 백만엔, 천달러, %)

| | 한 국(1998) | | 일 본(1998) | | 미 국(1996)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영리법인 | 51,770 | 74.2 | 11,511,081 | 96.0 | 170,620,945 | 99.8 |
| 비영리법인 | 18,039 | 25.8 | 477,350 | 4.0 | 372,603 | 0.2 |
| 계 | 69,809 | 100.0 | 11,988,431 | 100.0 | 170,993,548 | 100.0 |

<표 III-28>은 주요국의 1993~1997년 기간 중 비영리법인 수의 추이를 나타낸다. 동 기간 중에 각국 모두 비영리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도에 전년 대비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후 3~4%대의 증가율을 보이다 1998년 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단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과 일본도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증가율은 낮다.

<표 III-28>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수 추이

(단위 : 개, %)

| | 한국 | | 미국 | | 일본 | |
|------|--------|-----|-----------|-----|--------|-----|
| | 법인 수 | 증가율 | 법인 수 | 증가율 | 법인 수 | 증가율 |
| 1993 | 10,329 | | 1,118,131 | | 85,684 | |
| 1994 | 11,050 | 6.5 | 1,138,598 | 1.8 | 86,217 | 0.6 |
| 1995 | 11,487 | 3.8 | 1,164,789 | 2.2 | 86,797 | 0.7 |
| 1996 | 11,959 | 3.9 | 1,188,510 | 2.0 | 87,482 | 0.8 |
| 1997 | 12,575 | 4.9 | 1,232,214 | 1.9 | 88,020 | 0.6 |
| 1998 | 12,817 | 1.9 | - | - | 88,339 | 0.4 |

나. 비영리법인 관련세제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일반영리법인세율인 30%보다 낮은 22%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5년간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비영리법인이 지배하는 단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하고 있다.

〈표 III-29〉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 | 영리소득 | 비영리소득 | 이자·배당소득 |
|-----|---------------------------------|-------|--|
| 한 국 |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비과세 | · 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5년간 과세이연 |
| 미 국 |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 (고유목적사업소득세 과세) | 비과세 | · 비과세 · 과세 : ① 비영리기관이 지배하는 회사나 단체로부터 수취, ② 부채를 통해 얻은 자산으로부터 발생 |
| 일 본 | 저율과세 | 비과세 | · 비과세 · 과세 :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발생 |

상속·증여세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미국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미국은 증여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상속·증여세의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한해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은 상속 및 유증에 의해 재산을 ① 국가, ② 지방공공단체, ③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에 대해 증여자에게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표 III-30> 주요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 | 납세의무자 |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 |
|-----|-------|--|
| 한 국 | 수증자 | · 공익법인 : 비과세 · 공익법인의외 : 과세 |
| 미 국 | 증여자 | · 수증자인 비영리법인은 과세와 무관 · 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전하는 증여자 : 비과세 |
| 일 본 | 수증자 | · 종교·자선·과학·교육·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단체 : 비과세 |

주 :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기부자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는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고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한도금액 내에서 손금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도금액 설정시 소득금액만을 고려하지만 일본은 자본금과 소득금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한도금액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단체 및 기타 공익단체 모두 과세소득의 10%로 비교적 단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우리나라는 법정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하고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따라서 세제상 지원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인과 비슷하다. 일본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동일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법인과는 세제상 지원하는 기부금의 구분에 차이가 있다. 소득

공제한도는 연중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의 25% 상당액 한도)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일반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이 인정되는 반면 개인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조정총소득의 50%를 한도로, 그 외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조정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상단체 범위, 한도금액 설정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각국의 제도만으로는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1>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 | 기부금의 종류 | 공제한도액 | |
|----|--|--|--|
| | | 법인(법인세) | 개인(소득세) |
| 한국 | 법정기부금 | 사업연도소득 ¹⁾ 금액 - 이월결손금 | 전액 소득공제 |
| | 지정기부금 |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 | (총합소득-전액공제기부금) × 10% |
| | 비지정기부금 | 손금인정 안 됨 | 손금인정 안 됨 |
| 일본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전액손금산입 | 연중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의 25% 상당액 한도)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 |
| | 지정기부금 | | |
|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일반기부금 손금산입방식 사용 외에 그 동 액까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 | 공제 없음 |
| | 일반기부금 | (자본 등의 금액 × 0.25% + 소득금액 × 2.5%) × 1/2 | 공제 없음 |
| 미국 | 특별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연방·주정부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 | 과세소득의 10% | 조정 총소득 ²⁾ 의 50% 소득공제 |
| | 기타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 | 조정 총소득의 30% 소득공제 |

주 : 1) 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손금총액
 2)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임.
 자료 : 財經詳報社, 『日本の税制』, 1999.

IV.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기본방향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및 사후관리제도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고안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책은 관련 단체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정착된 과정을 보면 일부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비영리법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및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할 때 앞서 언급한 큰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큰 기본방향 하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결정과정도 역시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운영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관련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이 제고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간의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제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과정에서도 해당 단체의 공익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공익성 검증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기부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주어지는 기부금 관련제도도 기부대상 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세제지원이 공익성에 근거하여 차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세법간에 세제지원의 대상이 상이하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관련 조세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조항의 개정을 통해 관련세제의 합리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관련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이는 비영리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있는 세제혜택을 배당소득까지 확대하여 비영리활동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를 의무화하면서 의료사업수익은 영리소득과 같이 수익사업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관련세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의 기본방향에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화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하여 지주회사화를 방지하면서도 주식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도 통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큰 불이익이 없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대상법인을 확대하여 투명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개선방안

가.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공익성 제고

1) 비영리법인 관련 조세체계의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세제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지정기부금을 인정하는 단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한 단체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가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근거로 주어지는 세제지원의 대상이 세법 간에 크게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세법간에 불일치하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를 비교한 것이 <표 IV-1>과 <표 IV-2>에 정리 되어있다.

<표 IV-1>의 상단부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의 분류 17개가 열거되어 있다. 이 단체들은 세법간에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속하는데 세제적용의 의미를 보면 이 단체들에 기부 및 상속·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기증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증단체는 상속·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표 IV-1>의 하단부에는 법인세법에는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없는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없는 비영리법인이 각각 열거되어 있다. 법인세법에만 있는 경우에는 기증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증단체는 상속·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만 있는 경우에는 수증단체는 상속·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기증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세제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부관련 비영리법인 비교

| 일 치 (17개) | |
|---|---|
|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법인 포함) / 종교 및 교화 목적 단체 / 비영리 예술 및 문화단체 /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의료법인 및 정신의료법인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한국장애인보호공단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 비영리법인 / 영유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¹⁾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산하조직 포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공익법인인 법률구조법인 / 과학관 /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한국청소년연맹 및 스카우트주관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초·중·고등학교 설립·경영법인,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 추천의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포함),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
| 불일치 | |
| 법인세법에만 있는 것(281개 ²⁾) | 상속·증여세법에만 있는 것(16개) |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적십자사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한국보훈복지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한국여성개발원 / 대한결핵협회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산하조직 포함)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외국의 문화친선단체 /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공중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육성되는 공익법인 /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 / 대한민국헌정회 /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출연받아 벤치기업 육성 사업을 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일본대한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법인 /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 사용자로부터의 출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 /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을 위해 지정된 재단법인 /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주 : 1) 법인세법은 어린이육영사업 비영리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출연으로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 비영리법인
 2)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시된 263개 포함.

<표 IV-2>는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단체와 불일치하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다. <표 IV-1>에서는 국세 안에서의 일관성에 대한 것이었고 여기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안에서의 일관성에 대한 것으로 조세 안에서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임을 고려하면 우선 국세 안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V-2>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대 지방세법상 기부관련 비영리사업자 비교

| 일 치 | 불일치(지방세법에만 있는 것)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목적 단체 · 초·중·고등학교 경영자 및 사회교육단체 · 사회복지법인(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 목적 단체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나)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간의 일관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그 시사점으로부터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세계가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우리의 세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일본의 세제를 분석하여 그 일관성 정도를 비교한다.

<표 IV-3>은 미국의 소득세법과 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지원을 비교한 것으로 대부분이 일치하고 극히 일부분만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여세와 소득세법 양 부문에서 자선(charities)과 관련되어 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대상(제2522조(a)(1)~(4)와 제170조(1)~(5))은 거의 일치하지만 예술(art)의 장려를 그 기관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인, 조합, 자선단체, 기금, 재단의 경우 기증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는 반면 기증에 대한 소득세제상의 소득공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장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증자의 소득공제는 인정되는 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고 있지 않다. 요약하면 예술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장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소득세제와 증여세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법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미국의 소득세(Income Tax)법과 증여세(Gift Tax)법상의 공제대상 비교

| 일 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목적만을 위한 때, 국가 또는 수도, 주 또는 그 정치적 부속기관 · 아동 및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의 목적, 또는 국내·외적 아마추어 스포츠를 장려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법인, 조합, 자선단체, 기금, 재단. · 아동 및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의 목적으로 기부구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부조회, 조합, 협회. · 보훈대상자 자녀나 보훈조직 또는 그 보조단체 및 사회 | |
| 불일치 | |
| 소득세법에만 있는 것 | 증여세법에만 있는 것 |
| 장례의 목적만을 위한 비영리법인 | 예술을 장려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법인, 조합, 자선단체, 기금, 재단. |

<표 IV-4>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제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간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분류상 15개 분야에 해당하는 단체가 세법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7개 분야에 해당하는 단체가 세법간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증자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상속·증여세법상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 세법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즉 기증자는 세제상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반면 수증단체는 상속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일본의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부관련 공제대상 비교**

| 일 치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고용촉진 법인, 고령자 고용안정 목적 법인, 재단법인 장수사회개발센터, 정신장애자 사회복지촉진센터, 심신장애자복지협회 포함) / 과학기술 진흥 법인(종합연구개발기구, 이화학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우주개발사업단, 해양과학기술센터, 과학기술진흥사업단,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포함) / 학술진흥 법인(일본학술진흥회, 지방·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포함) / 학교교육 법인(방송대학학원,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일본육영회) / 문화 보전·향상 법인(일본예술문화진흥회) / 환경보호 법인(환경사업단, 환경위생동업조합, 환경위생동업조합연합회,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협회, 광역입해환경정비센터) / 갱생보호법인 / 박물관 / 후진국 경제협력 목적 법인 / 대외 자국소개 목적 법인 / 빈곤층 법률소송 지원 법인 / 재중국 잔류국민 귀국지원 및 생활안정 목적 법인 / 범죄 및 폭력 예방 관련 법인 / 기타 법인(자동차안전운행센터, 국제교류기금,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연구진흥조사기구, 일본적십자사,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 재단법인 일본올림픽위원회, 재단법인 무역연수센터) |
| 불일치(법인세법에만 있는 것) |
| 종교법인 / 산업 관련 공익법인(어업신용기금협회, 酒造組合,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종합사업단, 농축산업진흥사업단 등 포함 44개) / 근로자복지 관련 공익법인(직업훈련법인, 농업공제조합, 근로자재산형성기금,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등 포함 31개) / 전문직 관련 공익법인(행정서사회, 사법서사회, 세리사회, 사회보험노동사회, 일본공인회계사협회, 변호사회 등 포함 12개) / 보건·의료 관련 공익법인(건강보험조합, 건강보험조합연합회, 국민건강보험조합,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 국민후생복지 관련 공익법인(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연합회, 후생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연합회) / 기타 공익법인(도서관,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도시의 국제교류 지원 목적 법인, 국제관광진흥회, 통신·방송기구, 방송심사센터,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홍수 관련 인명구제 목적 법인, 해상재해방지센터, 위험물보안기술협회, 경자동차검사협회, 고압가스보안협회, 소형선박검사기구, 시가지개발조합,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 자동차사고대책센터, 제품안전협회, 소형자동차경주회, 자전차경기회, 지방경마전국협회, 통관정보처리센터, 투자자보호기금, 주택가구정비조합, 토지개발사업단체연합회, 토지가옥조사사회, 일본소방검정협회, 일본전기계기검정소, 재단법인 일본체육협회·일본올림픽위원회·무역연수센터를 제외함,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세법간의 불일치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간에 각각 1개의 비영리분야에만 국한하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는 세법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유

사하게 세법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불일치의 정도는 우리보다 크게 낮고 불일치의 형태도 우리와는 다르게 기증자는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수증단체는 상속·증여세의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세법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모든 비영리법인을 공익성을 기준으로 일반비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영리법인세율로 과세하고 기부자의 소득공제는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협동조합 등 비영리성은 인정하되 단체의 설립 취지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기부자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속하는 법인은 민법 32조에서 지정하는 분야의 단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수혜 단체가 해당된다.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단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용어도 일반비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통일함으로써 국세 내에서의 조세지원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와도 일치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는 각 지방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정책목적상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2) 기부금 관련제도의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정기부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이 높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이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기부를 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의 금액을 한도로 비용 처리된다. 개인은 종합소득의 10%를 한도로 공제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1억 2천만원(법인 2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다음의 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에는 1억원(법인: 2억원)
- 정당의 당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법인: 2억원)

-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2천만원(법인: 5천만원)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200억원, 시·도지부 후원회는 20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2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기부할 수 없다(제6조의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된다.

-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각출하는 금품
-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금품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 법의 목적이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의 규제에 있기 때문에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차별화되는 세법상 규정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나) 개선방안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다. 200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전액 손비인정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2003년 말까지 지출액의 50%로 축소될 예정이다. 단,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대상 단체에 국립 암센터,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후원금은 축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을 통해 정당후원금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들이 정당으로부터 기부압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무분별한 세제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후원금도 타 기부금과 동일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타 기부금보다 세제상 혜택을 더 크게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치적인 활동이 크면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미국의 기부금 지원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3) 비영리법인 공익성 검증체계의 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IRS가 관여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중 면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IRS의 공익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공익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 테스트와 운영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 면세 자격을 획득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면세 자격은 유지된다.

면세 자격을 얻으려면 정관과 내규를 제출해야 한다. 정관은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내규는 기관의 운영지침과 같은 것이다. 조직 테스트란 제출된 정관과 내규에 명시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다. 정관상 기관의 목적이 면세 목적이어야 하고 주요 활동으로서 면세 목적이 아닌 활동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IRS에서는 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거치지 않으므로 주 정부에 등록된 단체인지만을 확인한다. 면세 목적이란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목적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그 밖에 기관의 수입을 이사·관리자·수탁자 등에 대한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청산시 자산을 반드시 면세목적, 공익목적 등에 분배한다는 조항, 면세기관의 실질적 활동이 선전활동이나 입법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민간재단의 경우에는 가산세부과를 유발하는 활동을 금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조직 테스트가 설립 당시의 취지를 주로 테스트하는 반면 운영 테스트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공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공익적 기관으로서 면세 자격을 얻으려면 기관의 면세활동으로 인한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 면세기관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면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만일 면세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면 고유목적무관사업으로서 과세될 수 있다. IRS는 면세기관의 재정 규모에 상응하는 공익적 지출을 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지출상응 테스트(commensurate test)를 한다. 특히 민간재단의 경우 최소한 투자자산의 연평균가치의 5%를 매년 공익적 활동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면세기관이 소득을 축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지출하기 위한

축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기관의 후원 유인능력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IRS는 후원 비율 테스트(support ratio test)를 통해 기관의 공익성을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조직 테스트에서 입법활동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 및 선거운동기관은 면세 자격을 얻는 기관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자는 동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관할 부처의 해당 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설립허가를 하고 있다.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② 정관
- 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⑤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 ⑥ 창립 총회 회의록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②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관할 부처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시 고려하는 기준은 ①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정그룹이 되면 안 된다는 것과 ② 사업이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공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른다.

이상은 비영리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의 공익성 테스트인 조직 테스트와 운영 테스트를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 <표 IV-5>와 같다. 미국은 IRS의 공익성 테스트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관할 부처의 비영리법인 인·허가시 제출사항, 재정경제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기준을 모두 합한 내용이다.

<표 IV-5> 공익성 검토사항 비교(미국·한국)

| | 미 국 | 한 국 |
|--------|---|--|
| 조직 테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정관에 기관의 목적을 면세 목적으로 제한하여야 함. · IRS에 면세신청 전에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함. · 청산시 자선목적(501(c)(3)) 또는 공익목적에 분배하여야 함 · 이사, 수탁자 등에 이익분배가 금지되어야 함. · 기관의 목적을 정관에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여야 함. · 정치적 활동 금지 · 민간재단은 가산세 부과되는 활동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제출¹⁾ · 주무관청의 허가¹⁾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귀속³⁾ · 실현 가능한 목적인지 검토¹⁾ |
| 운영 테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함. · 자선적 지출 감시 · 수입에서 자선적 지출의 비중 · 면세 목적 지출 규모가 재정 규모에 상응하는지 측정 ·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면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함. · 기부 유인능력 검사(후원비율시험) ·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관이 아니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가 불특정다수²⁾³⁾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출¹⁾ · 출연재산 매각금액 및 운용소득의 공익 목적 사용³⁾ · 목적사업 수행 재정능력 검토¹⁾ · 회원(기부자)이 불특정다수²⁾ |

주 : 1) 관할부처의 인·허가시 기준이 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 재정경제부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지정기준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일단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세법상 우리나라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정 시점에서 해당기관의 공익성 테스트를 거쳐 면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세 자격 부여를 위해 설립정관이나 실질적인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에서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관할부처에서 비영리법인

으로 인가를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법인의 인·허가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간에 인·허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단,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 시 재정경제부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불특정 그룹의 회원 구성과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직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검증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세제지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 매우 불충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선방안

비영리법인 전체에 세제상 혜택을 줄 것인지, 비영리법인 중 일부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에만 세제상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우선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비영리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도입과 공익성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단계에서 모든 부처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미국과 같이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심도있게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도입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운영도 현재와 같이 재정경제부에서 시행하는 방안과 현장과 가까운 국세청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익성 검증 시스템의 마련은 불필요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비영리법

인의 공익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의 합리성 제고

1) 의료사업수익에 대한 세제 합리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수익을 일반 의료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무상진료 등 자선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일반의료행위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의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어 이윤의 분배가 불허되고, 또 청산시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의무조항이 부여되는 이유는 의료사업의 공익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일반의료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 개선방안

물론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동시에 인정하는 외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사업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세제의 틀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순수의료목적에 국한하여 그 비용의 일정비율만큼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비용의 일정비율만을 손금산입함으로써 세제상 혜택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투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기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 또는 의료기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의료법인은 비영리·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확실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일본에서의 영리병원인 의료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분배를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영리를 선택한 의료기관과 비영리를 선택한 의료기관간에 차별적인 정책의 선택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가) 현황 및 문제점

1988년 12월의 세법개정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채권·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얻는 매매익과 이자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이익배당과 건설이자의 배당금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1988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모든 이자소득¹⁵⁾과 모든 배당소득¹⁶⁾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되었다. 이자·배당소득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 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지급준비금제도를 시행하였다.

1994년에 지정기부금과 지급준비금의 이원적인 체계를 통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를 삭제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합산한 금액으로 통일함으로써 비영리공익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간의 구분이 사라졌다. 1994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이전에는 세법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만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이 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선방안

1994년 세법개정의 방향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

1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다.

하겠으나 동 제도가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층 더 이바지하려면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준비금 설정이 허용되는 것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대만·싱가포르·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은 수동적 소득이라 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의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은 주식, 부동산, 현금 등 여러 가지 자산 형태로 이루어지나 이 중 주식을 통한 출연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므로 배당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방안은 비영리법인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비영리활동을 고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유도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기부금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원천소득이 수익사업소득과 고유목적사업소득 중에서 어떤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 등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만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하는 영세한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하여 비영리법인의 규모 및 재정상태에 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의 대부분이 대규모의 비영리법인들로부터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사업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이자소

득에 대한 과세 역시 고유목적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성 제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관련 제도의 합리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주식을 합하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출연받은 주식
-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조 제2항).

1996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5% 이내로 축소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는 것이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주식을 분산소유하면 그만큼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 낮아지게 되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되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보유분에 대해서는 5% 초과 20% 이하는 3년, 20% 초과분은 5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의무 위반시에는 1회에 한해 5% 초과주식가액(액면

가)의 20%에 상당하는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년 세법개정으로 가산세 부과방법이 개정되어 때 사업연도 말 시가의 5%를 10년까지 부과하며 5% 초과여부 판단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상속·증여에 의한 주식출연시 출연 전 5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특수관계인을 주식의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특수관계인에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그 임원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 제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적용한다(5% 초과보유분에 대한 기존의 가산세는 19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함).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의 90% 이상 중 큰 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법인을 말한다. 이는 유예기간 종료일에 3년간 또는 5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의 평균액을 통산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매년 판정하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포함)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과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도 포함한다.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해 동일종목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때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1999년 12월 31일 현재 30%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1/2 이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미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 개선방안

1999년 세법개정에서는 동일종목 주식 5% 이상의 보유 금지의 무 외에 그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동일종목 주식보유 한도와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식을 현금화해서 출연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선의의 기업가가 공익법인에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동일종목 주식보유 한도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업가나 재산가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기존의 5%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초과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를 시가로 할 경우 평가의 기준이 사업연도 말이기 때문에 사업연도 말의 주가를 예측하여 사전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총자산이나 보유주식의 가액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 제한

(가) 현황 및 문제점

공익법인을 통하여 출연자 및 그 계열사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1999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제78조 제8항). 언론매체 또는 공익사업 수행시 팸플렛 등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광고·홍보매체 등을 이용

한 경우 그 비용을, 행사시 팜플렛·입장권·기념품 등을 이용한 경우는 당해 행사비용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개선방안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기업에 대한 광고·홍보의 행위는 미국의 제도에서 보면 ① 크게는 면세단체가 업무무관사업으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로 볼 수 있으며 ② 작게는 민간재단이 부적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기내부거래의 경우로 볼 수 있다. ①의 경우 업무무관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나 광고의 표현정도가 적정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②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금전적인 혜택이 없다면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표현의 정도와 무관하게 광고로부터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고, 금전적 혜택의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미국보다 매우 강한 세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이 타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광고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거래보다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가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고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관계자인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광고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행 가산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산세의 규모를 대폭 축소(광고·홍보에 소요된 경비 전액 ⇒ 광고·홍보에 소요된 경비의 20~30%)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익법인의 투명성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세무관련사항의 확인·검사제도를 1996년 12월에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2년에 1회 외부전문가(3인 이상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는 것이다. 외부전문가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출연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 자기내부거래 위반여부, 동일종목주식의 5% 초과보유 여부 등이다.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자산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출연자 1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연재산가액이 전체 출연재산가액의 5% 미만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다.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외부확인·검사결과는 일반인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장부 작성·비치의무(10년)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에 대해 7/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999년 12월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자산가액 5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자산가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확대하였다(1999년 12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세무관련사항의 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게 되어 있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바람직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개선방안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 대상이 자산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대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확인·검사를 2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강화하거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은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외부감사에 대한 의무규정과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각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재무보고 작성기준이 제정되면 투명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재무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본에서 1997년부터 총리부에서 매년 『공익법인에 관한 연차보고(공익법인 백서)』를 발간하여 공익법인의 현황 및 공익법인에 대한 시책 등을 공개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손원익(1995)의 후속 연구로서 그 동안 변화되어 온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환경을 인식하고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의 큰 방향은 공정한 세제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현실화 및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법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위가 상이하여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중 전액 손금인정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인정되는 사회복지, 자선, 교육, 종교, 문화 등과 같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단체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되도록 공익성 테스트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정비 및 운영이 요구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인·허가를 위한 규칙은 있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적절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지정할 때에도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성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곤 한다.

넷째, 세법상 자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되는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며, 동시에 무상진료 등 자선사업을 제외한 일반 의료행위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또는 의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현행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이자소득 전액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배당소득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라 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출연이 가장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당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법인에 대한 5% 주식보유한도 규정 때문에 신규 공익법인의 설립이 저해되고 기존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면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언론매체 또는 공익사업 수행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또는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이 1999년 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공익법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이 타 그룹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외국 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광고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년에 한 번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자산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매년 실시하거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은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 작성 기준을 제정한 후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제시된 정책방안이 관련세계 개선에 반영되어 우리의 비영리법인 관련 세계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되길 기대한다. 손원익(1995)이 발간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통계의 축적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비영리분야에도 관련통계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5~1999.
- 국세청, 『공익법인의 실무안내』.
- _____, 『국세통계연보』, 1994~1999.
- 박충환, 『비영리법인의 세무』, 2000.
- 손원익·김진수, 공익법인 사후관리 제도의 합리화, 2000. 9.
- _____. 김유찬·성명재·현진권, 『문화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1996. 10.
- _____,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5-05, 한국조세연구원, 1995.
- _____,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1997.
- 조세통합사, 『2000 조세편람』, 2000.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 _____, 『1998년 국민계정(확정)』, 2000.
- 中央監査法人 編著, 『公益法人の運営實務 Q&A』, 1999.
- 大藏財務協會, 『國稅廳 統計年報書』, 1993~1996.
- 總理府 編, 『公益法人白書』, 1999.
- 岩村 讓一, 『公益法人の會計處理と稅務』, 稅務研究會出版局, 1999.
- 關場 修·甲中 豊 編著, 『公益法人の稅務』, 公益法人協會, 1995.
- Boris, Elizabeth T., and Eugene C. Steuerle, *Nonprofits & Government*,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9.

- CCH, *2000 U.S. Master Tax Guide*, 2000.
- Ben-Ner, Avner and Benedetto Gui, *The Nonprofit Sector in the Mixed Econom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 Blazek, Jody, *Tax Planning and Compliance for Tax-Exempt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1993.
- Clotfelter, Charles T., *Who Benefits from the Nonprofit Sect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Hopkins, Bruce R.,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1992.
-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1999.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0. 7.
- IRS, *1996 Annual Data Book, Publication 55B*, 1997.
- Rose-Ackerman, Susan, *The Economies of nonprofit I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 Weisbrod, Burton A., *The Nonprofit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Yamamoto, Tadashi, *Emerging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Community*,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1995.

부록 I.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공익법인

- 재정부령에 의한 공익법인 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1.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한국更生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동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지원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동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활공학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일본 대한국민단이가 운영하는 사업
19.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2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

하여 운영하거나 벤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2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2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운영하는 사업
23.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24. 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이 운영하는 실업자취업을 위한 재교육, 학술연구, 자선 및 한미간의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업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6.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된 재단법인이 행하는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사업
27. 재단법인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신지식산업육성사업
28.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
29.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친선사업·자선사업 및 장학사업

부록 Ⅱ. 당기순이익과세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6.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부록 Ⅲ.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함)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부록 IV.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1) 다음의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6.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1.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2.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 다음의 기부금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 서울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更生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부록 V. 재정경제부령에 의해 고시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사업단체,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보건사업단체 등에 해당하는 264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포함)

○ 재정경제원공고 제1996-30호(1996.4.18, 37개)

- 장애인복지사업단체 :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한국농아복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자행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사)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 (사)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사)조명하선생기념사업회, (사)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사)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 보건사업단체 :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한국당뇨협회, (사)한국성인병예방협회

- 기타 단체 : (사)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사)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사)생활개선회, (사)환경마크협회

○ 재정경제원공고 제1996-100호(1996.11.22, 18개)

- 부녀복지사업단체 :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한국부녀복지연합회, (사)중앙부인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중소기업지원단체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봉사단체 : (사)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 교류협력단체 : (사)한·러시아극동협회, (재)국제방송교류재단
- 기타 단체 : (사)순국선열유족회,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자전거사랑시민모임, (사)한국농선회,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재정경제원공고 제1996-122호(1996.12.27, 4개)

-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재)플랜인터내셔널한국위원회,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사)한국여학사협회

○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17호(1997.2.28, 27개)

- 복지사업단체 : (사)한양로터리클럽, (사)제주복지회,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사)한국복지정책연구소, (사)제주사회복지회, (사)한국자애복지회, (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사)한국지역정책연구회, (사)자원봉사에워, (사)한국목회지원회, (사)한국제이티에스, (사)베트남한인2세와함께하는모임,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사)밝은가정협의회, (사)한국부랑아인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 독립유공자기념사업단체 :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사)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 (사)박차정의사승모회, (사)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 기타단체 : (사)한·중남미협회, (사)한국여성정보원,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한국우주소녀단,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48호(1997.6.3, 11개)
- (사)4월회, (사)한중우호교류기금회, (사)공동체사회포럼, (사)한국골수은행협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재)한국해사재단, (사)대한갱생보호회,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재)행정갱생보호회, (재)한국기독교교회복지원
-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55호(1997.7.5, 7개)
-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 (사)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 (사)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사)남북나눔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32호(1998.2.28, 10개)
- (사)21세기통일봉사단, (재)호산나, (사)한국·몽골협력협회,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사)기독교세진회, (재)한국국제노동재단, (재)연암상록재단,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울산자원봉사센터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98호(1998.7.3, 13개)
-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볼런티어 21, (사)국제옥수수재단, (사)민족통일에

스라운동협의회, (사)경실련통일협회,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재)민족통일선교협회, (사)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재)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145호(1998.10.2, 3개)

-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함석헌기념사업회, (사)여성정책연구소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189호(1998.11.13, 4개)

-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한·중문화협회,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재)문우언론재단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219호(1998.12.29, 3개)

-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재)5.18기념재단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35호(1999.3.22, 9개)

- (재)평화와 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사)탈북동지회, (재)광성,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담안선교회,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사)사랑의 친구들, (사)정해복지, (사)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화 시민운동 추진협의회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51호(1999.4.26, 13개)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사)지구촌나눔운동, (사)대한무궁화중앙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재)한국기자협회기금, (사)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재)한국실명예방재단, (사)한국여성능력개발원, (사)월남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58호(1999.5.27, 6개)
 - (사)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사)한·카자흐친선협회, (재)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사)충효국민운동본부,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재)토지문화재단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62호(1999.5.31, 1개)
 - (사)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73호(1999.6.25, 6개)
 -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사)좋은벗들, (사)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사)국민화합시민연대, (사)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123호(1999.9.27, 13개)
 -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재)한·미문화재단, (재)한민족복지재단,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사)우리문화가꾸기회,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사)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사)한맥,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사)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154호(1999.11.1, 6개)
 - (사)한아봉사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루프수들이기는사람들협의회,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160호(1999.11.20, 3개)
 - (재)천년의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사)장준하기념사업회

-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187호(1999.12.31, 10개)
 -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사)선한사람들, (사)한국알트루사,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국민정치연구소,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인간개발연구원, (재)서울산업진흥재단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7호(2000.1.25, 6개)
 -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사)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도시문화연구재단, (재)2010년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41호(2000.4.11, 9개)
 - (재)한국여성기금, (사)전국새농민회, (재)애린복지재단, (사)노사문제협의회,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사)한국통계학회, (사)한국여성정치연맹,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75호(2000.5.29, 7개)
 - (사)세종연구원, (사)디지털경제연구소,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사)지구희망의 손길, (사)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사)한중우호협회, (사)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89호(2000.6.15, 7개)
 - (사)21C도시정책개발원,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재)유진벨,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사)한국공법학회, (사)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32호(2000.10.6, 21개)
 - (사)한국소비자연맹,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재)로우시콤피법률구조재단, (사)이북도민지도자협의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사)한국간협회,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대한암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은누리건강가족복지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재)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국제장애인협의회, (사)대전여인회, (사)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인모임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49호(2000.11.17, 9개)
 -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재)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재)한국유방건강재단,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재)해양문화재단,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부록 VI.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 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산법인의 해산시 이사회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문요약>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 방안

손 원 익

최근 10년간 비영리법인 신고 법인 수는 41.9%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으로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비영리법인의 활동 역시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995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주요국의 최근 관련 통계자료 및 조세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큰 방향은 공정한 세제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현실화 및 합리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법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중 전액손금 인정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인정되는 사회복지, 자선, 교육, 종교, 문화 등과 같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단체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되도록 공익성 테스트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정비 및 운영이 요구된다. 넷째,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및 의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배당소득이 제외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출연이 가장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당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포함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법인에 대한 5% 주식보유한도 규정은 기존의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곱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또는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광고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는 매년 실시하거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ax system related to Non-profit Organizations/Corporations

Son, Won-Ik

In the last 10years the number of tax bodies related to non-profit corporations has increased by 41.9% meaning there has been a sustained growth in the number of non-profit corporations. Owing to the increase in demand, non-profit corporations have become very active in society. Consequently, society has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tax system regarding the activities and establishmen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non-profit corpor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and statistics produced by developed countries. We also take consideration of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s related to non-profit corporation since the study-Tax policy proposals for non-profit organizations(1995)-was published. Consequently, this study presents a layout of an advanced tax system similar to that of a developed country.

The operation of fair tax application can elevate equality, increase transparency, and advance the tax system to readjust to realistic and a rational level. Following are the reforms needed in the current tax system.

Firstly, in order to minimize confusion for the taxpayer, there must be consistency in the tax law applying to non-profit corporations. Secondly, tax reductions are currently given on the whole sum of contributions given to political parties, however, tax reductions are given to only a part of the contributions made to social welfare, charity, education, religion, culture. Contributions made to corporations in non-profit fields defined by Civil law section 32 can be seen to have greater public interest, which shows there is a need for reform regarding reductions. Thirdly, tax registr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endowment of tax benefits should be carried out with objective and transparent standards. The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 tax system, with the consistency of these standards, can be possible with the introduction of a public-interest test. Fourthly, medical corporations, income is being classed as for-profit income, which is causing problems. Therefore, proper steps should be taken to readjust the boundaries in distinguishing for-profit incomes, and also enable the profits to be used in order to reinvest for-medical activities. Fifth, in the current system, dividends income is excluded when establishing non-profit business reserve funds. Tax exemption applies to both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in most countries, and also, within the several forms of capital contributions stock contributions are mostly preferred. Regarding these facts there is a need for consideration to include dividend incomes as a part of non-profit business reserve funds. Sixth, in the case of owning more than the stock holdings limit, which is 5%, voting rights should be voluntarily resigned.

Consequently, only in the case of the voluntary resignation of voting rights is retracted should a gift tax be imposed on the amount that exceeds the stock holdings limit of 5%. Seventh, the current system also prohibits advertising and promoting of affiliate corporations. However, advertising and promotion should be allowed at the normal rate and, if the advertisement is not excessive or immoderate, there should not be any disadvantages imposed. Eighth, public corporations should operate yearly inspections by external specialists.

<著者略歷>

손원익

미국 William Penn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미국 California 주립대(Santa Cruz) 객원 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政策報告書 00-01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2000年 12月 28日 印刷

2000年 12月 30日 發行

著 者 손원익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 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0

ISBN 89-8191-183-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 원